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 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**2014년 3월 12(수) 10:00 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산업부 석유산업과 강경성 과장(044-203-5220), 배성준 서기관(5224), 박위규 사무관(5226)
무역정책과 조영태 과장(044-203-4020), 김현철 서기관(4021)

## 세계4대 오일허브 구축으로 동북아 에너지+금융 중심국가로 도약

**-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-**
**- 2020년 연간 250억불 이상 중계가공수출 -**

### 〈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 핵심 요지 〉

□ **동북아 에너지 중심국가로의 새로운 위상 확보와 세계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선진 통상국가로 도약**하기 위해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전략과 4대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

1 **(상업용 저장시설 확충)** 총 2조원의 민간 자금을 투입하여 **'20년까지 울산과 여수에 36.6백만배럴의 탱크터미널을 건설**하고 **정부비축 시설의 민간대여 확대**(약 20백만배럴)로 싱가포르(52.2백만배럴)를 넘어서는 저장시설 확보

2 **(석유거래 규제완화)** 행정·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**과세환급 절차 간소화***, **보세구역내 블렌딩 활동 범위 단계적 확대**, 해상 운송과 탱크터미널 보관 관련 규제완화

* 과세보류 상태에서 원유정제후 저장·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

3 **(석유트레이더 유치)** **석유트레이더의 전문업역을 신설**하고, 해외 트레이더의 국내법인 설립시 **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**을 검토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**새로운 일자리 창출** 유도

4 **(석유거래 금융인프라 구축)** **석유 동산담보대출 여건조성** 등 금융상품 확대와 **외환거래 신고의무 완화**를 추진하고, **청산소** 등 금융인프라 적기 구축으로 **에너지+금융 융합허브**로 도약

*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을 담당할 국내청산소 육성('16년~)
* 장외거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파생상품 상장 추진('16년~)



□ 정부는 3.12일, **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**를 개최하고 **"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"**과 **"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"**을 발표하였음

○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"**지역 주도 발전 전략**"과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"**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**"이 함께 논의되었으며,

○ 산업부(장관 윤상직)는 에너지분야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**"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"**을 **확정·발표**하였음

□ 오일허브란 **대규모 석유정제, 가공, 저장시설**을 기반으로 **석유거래, 물류, 금융서비스**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**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**를 의미함

○ 최근 한·중·일 등 **동북아 지역이 세계최대의 매력적인 석유시장**으로 부상하고 있고, 동북아 시장에 대한 싱가포르 오일허브의 영향이 축소되는 등 **국제 석유수급 환경의 변화**로 인하여 **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오일허브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**되어 왔음

○ 우리나라는 한·중·일·러를 연결하는 **지정학적 위치, 세계적 규모의 정제공장 보유, 깊은 수심과 천혜의 항만조건** 등을 고려시 새로운 오일허브 형성에 최적으로 평가되고 있음

○ 우리나라가 **세계4대 오일허브 국가로 부상**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저장인프라 구축, 석유 가공·운송 관련 규제완화, 석유트레이더 유치, 금융기능 업그레이드 등 국가전략이 필요한 상황

○ 이에, 상업용 저장시설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**울산, 여수를 중심으로 석유 중계가공무역을 조기에 활성화**하여 **우리나라를 동북아 석유거래와 금융의 중심국가로 육성**하기 위해 "**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**"을 마련하게 되었음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□ 산업부가 보고한 「**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**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

○ 이번 대책은 '20년까지 **동북아 에너지 중심국가로서의 새로운 국가위상을 확보**하기 위해 **에너지와 물류, 금융의 창조적 융합**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과감한 규제완화와 비즈니스 여건개선을 통한 **세계 최고수준의 선진 통상국가 도약**을 목표로 설정하고,

○ ① **상업용 저장시설 확보**, ② **석유거래 관련 규제완화**, ③ **트레이더 유치 인센티브 제공**, ④ **석유거래 관련 금융인프라 구축**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될 계획임

## 1 대규모 상업용 석유저장시설의 차질없는 확보

□ 정부는 **2조원 민자 투입**을 통해 울산과 여수지역에 2020년까지 연간 최대 4억배럴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**3,66만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**을 건설할 계획임

○ **여수 지역**의 경우 오일허브코리아여수(주) 설립을 통해 원유 350만배럴, 석유제품 470만배럴 등 **총 820만배럴**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터미널 건설을 완료했으며, '13.3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음

○ **울산 지역**에는 **북항에 석유제품 990만배럴 규모**의 저장시설과 항만접안시설 구축을 **2016년까지 완료**하고, **남항**의 경우 북항사업과 연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**원유 1,850만배럴 규모의 석유물류 인프라를 2020년까지 구축**할 계획임

□ 이와 함께, **정부비축시설을 민간에 대여하여 2,000만배럴 수준의 저장시설을 추가 확보**함으로써 현재 세계3위인 싱가포르 오일허브 저장규모를 능가하도록 할 계획임

* 오일허브별 저장규모(백만배럴) : (미국) 109.6 (유럽ARA) 87.4 (싱가포르) 52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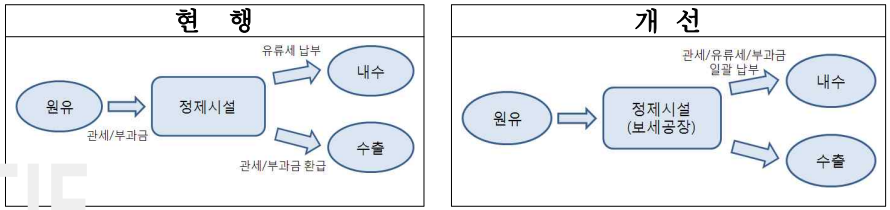


## 2 석유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세계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

① **(과세환급 절차 간소화)** 정유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지정하여 수출입 관련 금융비용 부담과 행정비용을 최소화

- (**현행**) 원유수입시 관세와 수입부과금를 징수하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, 내수용으로 사용할 경우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어 행정비용과 금융비용이 발생('13년 환급액 : 1.4조원)

- (**개선**) **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**를 통해 과세보류상태에서 정제후 내수용으로 사용시에만 관세, 수입부과금, 유류세 일괄 과세




② **(석유류 부가가치활동 허용 확대)** 수출용 석유제품 뿐 만 아니라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도 보세구역에서 부가가치 활동 단계적 허용

- (**현황**) 금년 1월 석대법을 개정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수출용 석유제품의 경우 블렌딩 등 부가가치 활동은 허용했으나, 내수용 제품을 위한 블렌딩은 제한

- (**개선**) 보세구역내에서 수출용 제품의 블렌딩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, 내수 목적의 석유제품 블렌딩 활동도 단계적 허용

③ **(해상 운송수단 선택 확대)** 석유트레이더 등 화주의 외국적 선박 이용 절차를 완화하여 국내항간 원활한 석유류 화물운송을 지원

- (**현황**) 국내항간 외항선 운행시 **40일전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허가** 필요

- (**개선**) **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용선 허가기간을 단축(20일)**하고, 중장기적으로는 **정유사↔탱크터미널, 탱크터미널↔탱크터미널간 파이프라인(송유관) 연결**로 동일항계내에서 운송제약문제 해결

④ **(석유제품 탱크보관 절차 간소화)** 탱크터미널에 보관중인 석유제품의 유종과 수량 변경시 신고·승인 절차 간소화

- (**현황**) 위험도 수준에 관계없이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모든 석유제품에 변동이 생길 경우 7일전 신고·승인 절차가 의무화

- (**개선**) 고위험도 유종에서 저위험도 유종으로 변경시에는(예: 휘발유에서 중유로 변경) 별도 절차 없이 보관·이용이 가능하도록 완화

⑤ **(국가석유비축자산 활용 지원)** 오일허브 저장시설 추가확보와 물동량 확대를 위해 **비축유와 비축시설의 트레이딩 활용 제한 완화**

- (**현황**) 비축유와 비축시설의 활용 범위에 제한이 있어 적극적인 트레이딩 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

  * 비축유 및 비축시설의 트레이딩과 대여는 총 비축물량의 각각 15% 이내로 제한

- (**개선**) **비축유의 트레이딩과 대여 활용 범위**를 **총 비축물량의 30%로 확대**하여 석유시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, 국내 정유사도 비축시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대여 요건 변경

## 3 글로벌 석유트레이더 투자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

① **(석유트레이더 법적지위 마련)** 국내 법인설립을 희망하는 글로벌 석유트레이더 유치를 위해 **석유트레이딩업 신설**

- (**현황**) 석대법에 의거 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5천kℓ이상 저장시설 구비 의무가 있는 수출입업 등록이 필요하여 트레이더의 국내법인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

  * 석대법상 석유사업자 업태 : 정제업, 수출입업, 판매업 등 3가지

- (**개선**) 석유트레이더의 국내진출시 **수출입업 등록 없이 국내법인을 설립**할 수 있도록 **석유트레이딩에 적합한 전문업역 신설**



② **(트레이더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)** 글로벌 석유트레이더가 국내 법인 설립시 **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**을 검토하고, 교육, 주거 등 트레이더들의 정주여건도 지속 개선

- (**현황**) 싱가포르는 세제지원을 통해 트레이더를 유치하고 있어, 우리나라도 트레이더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

  * 싱가포르의 경우 연간 1억USD이상 거래, 싱가포르내 기업지출규모 3백만SGD 이상, 3명이상 트레이더 고용시 10% 법인세율 적용(통상 법인세율은 17%)
  * 트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법인 설립시 법인세율 : 20~22% 수준

- (**개선**) '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(기재부 고시)'중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**석유류트레이딩업**(매매계약 등 단순 중개업 제외)**을 추가**하고, **현행 조세지원체계 내에서 지원 방안** 검토

③ **(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)** 동북아 석유물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오일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

- (**현황**) 다수의 트레이더 유치가 필요하나 단기간에 싱가포르 트레이더의 역내 이전에는 한계, 국내 트레이딩 전문과정도 거의 없는 상황

  * 현재 전문과정으로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(UNIST)의 오일트레이더 과정이 유일

- (**개선**) **글로벌 오일트레이딩 전문과정 마련**과 **국가자격증 제도 도입**을 통해 **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**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추진

## 4 석유거래 관련 금융인프라 적기구축으로 금융허브로 도약

① **(금융규제 완화)**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의 지침 개정을 통해 **석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동산 담보대출 여건을 조성***하고, 석유트레이딩 관련 **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완화****** 추진 검토

  * 글로벌 트레이더들은 일반적으로 거래물품을 담보로 하는 은행대출과 신용공여 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기관에는 관련 서비스는 거의 없는 상황

** 현재 석유/석유화학제품 트레이딩 대가를 상계시 은행에 신고 필요

② **(역내 금융인프라 확대)** 저장시설 구축, 제도개선 등과 병행하여 석유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**가격평가, 청산소 등 금융인프라 적기 조성**

- Platts, Agus 등 **해외 주요 석유가격 평가기관을 유치**하여 **동북아 지역 석유 기준가격 형성** 유도
- 아울러,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을 담당할 **국내청산소를 육성**하고, 장외거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**파생상품 상장** 추진

## 5 기대효과

□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에 따른 **경제적 파급효과**는 **단기적으로 3.6조원, 장기적으로 60조원**에 이르며, **2020년 이후 연 250억불 이상 석유류 제품의 수출증대 효과**가 기대됨

○ 또한, 위탁정제 및 가공, 항만인프라 확충 등 **석유거래 연관산업이 발전**되고, **국내외 석유수급 효율화와 간접비축효과**를 통한 **에너지 안보 강화**에도 기여할 전망

□ 정부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**에너지·물류·금융의 창조적 융합**을 이끌어내고, **에너지분야 창조경제 실현**과 **세계최고수준의 선진 통상국가**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

**[별첨 1]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개요**
**[별첨 2] 오일허브 개념도**
**[별첨 3] 제2호 안건(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)**
**[별첨 4]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**(요약)
**[별첨 5] 제1호 안건(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**(관계부처 합동)**)**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배성준 서기관(☎ 044-203-5224), 박위규 사무관(☎ 044-203-52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별첨 1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개요

| | |
|---|---|
| **날짜** | **'14.3.12(수)** |
| **안건** | **①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**<br>**i) 지역주도의 발전전략 추진계획(지역위)**<br>**ii) 중앙정부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**<br>**- 인센티브 부여, 규제완화·제도개선 중 농산어촌(기재부)**<br>**- 규제완화·제도개선 중 도시지역, 거점개발 촉진(국토부)**<br>**②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(산업부)** |
| **참석자** | **약 200명** |

○ **(정부)** 부총리, 미래부·교육부·문체부·농식품부·산업부·복지부·환경부·국토부·해수부 장관, 공정거래위원장, 금융위원장,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, 기재부 1차관·산업부 1차관, 안행부 2차관, 여성부 차관, 산림청장, 중기청장, 특허청장 등

○ **(지역)**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및 위촉위원, 지역4대 협의체 의장, 지자체장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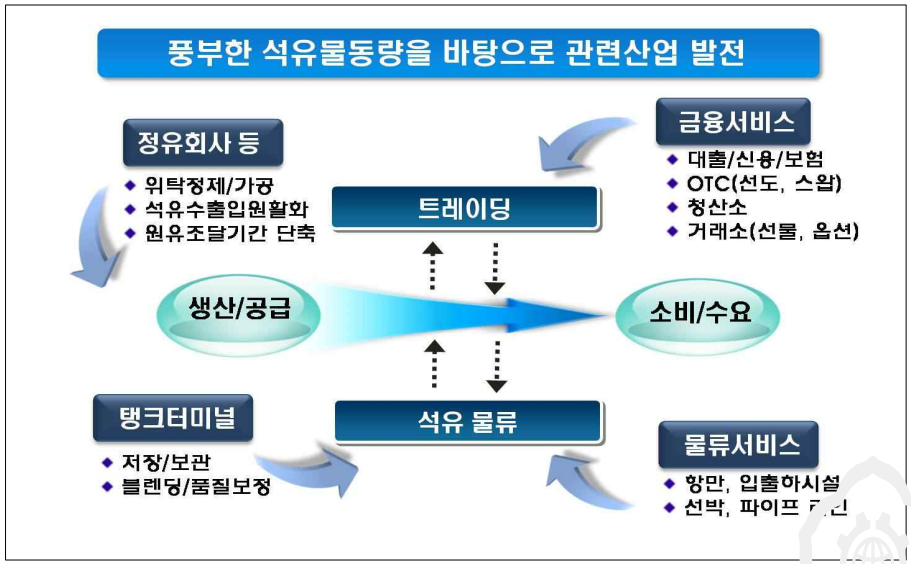
○ **(국회)**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

○ **(유관기관)** 석유공사 사장, 석유관리원 이사장, 한국거래소 이사장, 한국식품연구원장, 코트라 사장, 무보 사장, 수은 행장 등

○ **(경제계)** 경제단체장, 지역상의 회장(5명), 기업 대표 등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# 별첨 2 오일허브 개념도









## 별첨 3 제2호 안건(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)

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
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### 에너지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

#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

2014. 3. 12.

**관계부처 합동**

# 목 차


Ⅰ. 오일허브의 중요성 ····· 1

Ⅱ. 왜 한국이 동북아오일허브가 돼야 하나 ····· 3

Ⅲ. 한국의 오일허브 잠재력 평가와 문제점 ····· 5

Ⅳ. 추진경과 ····· 7

Ⅴ. 동북아 오일허브 비전과 추진전략 ····· 8

Ⅵ. 기대효과 ····· 17

참고. 부처별 실행과제 ····· 18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
# Ⅰ 오일허브의 중요성

## 1. 오일허브의 의미

□ 「대규모 석유정제·가공·저장시설 + 물류 + 석유거래 관련 금융서비스」로서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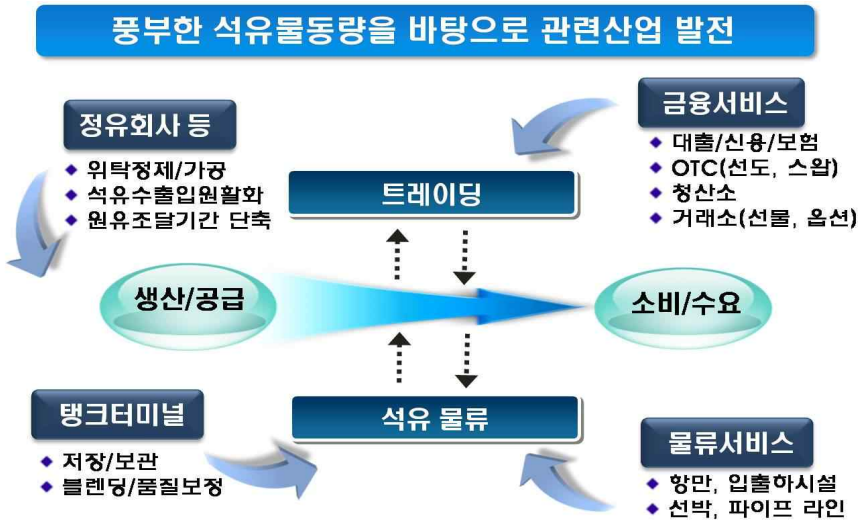
○ 석유물동량이 많은 지역에서 석유저장시설을 바탕으로 **정제, 가공, 수송, 보관 등이 활성화**되면서 오일허브로 태동

* 미국 걸프만, 유럽 ARA(암스테르담, 로테르담, 엔트워프), 싱가포르가 **세계 3대 오일허브이며 석유물동량이 많은 항만을 기반으로 형성**

○ 또한 트레이딩이 **활성화되면서, 대출/보험 등 금융서비스와 선물 등 파생상품거래 확대되어 국제 금융중심지로 발전**

* 세계 3대 오일허브 거래소 일평균 거래규모 : NYMEX(미국, WTI원유) 32억불, ICE(런던, Brent 원유) 13억불, SMX(싱가포르) 5억불 등

< 오일허브 개념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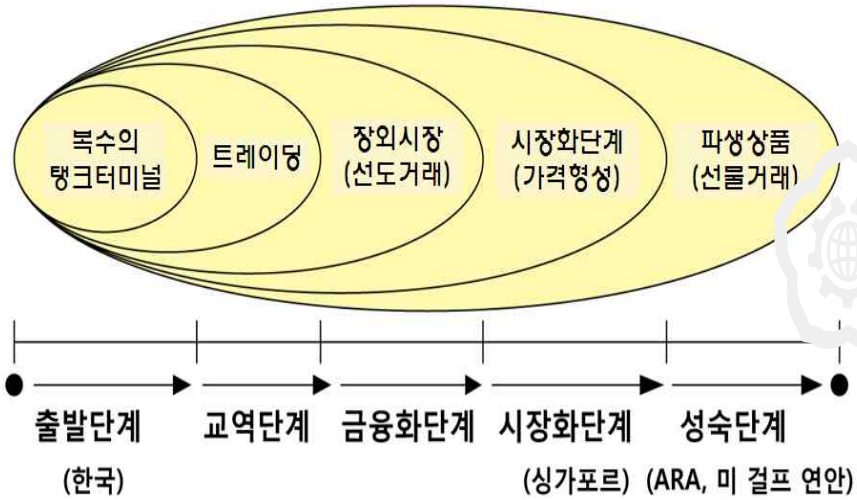
## 2. 오일허브의 중요성

□ 오일허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**막대한 신규 부가가치 창출**

○ 탱크 터미널 보관 → 트레이딩 → 장외시장 → 국제거래가격 형성 → 선물시장 등의 단계로 발전

* 싱가포르는 국제거래가격 형성단계, 미국·네덜란드는 선물시장 단계까지 발전

**< 오일허브 발전단계 >**




○ 싱가포르와 네덜란드는 비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**국제오일허브 전략**을 통해 금융허브로 발전

* 오일허브의 부가가치(GDP대비) : 11.5%(싱가포르), 7.3%(네덜란드)

□ 단순히 석유거래의 중심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가진 **선진 통상국가로의 도약 의미**



# Ⅱ 왜 한국이 동북아 오일허브가 돼야 하나?

## □ 동북아지역은 세계최대의 매력적인 석유시장으로 부상중

○ 한국, 중국, 일본 등 동북아를 포함한 신흥국 석유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**세계 석유시장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개편중**

* 아시아 석유수요는 19.2백만B/D로 세계 전체의 22%, 이중 동북아 3개국은 16.3백만B/D로 세계 전체의 19% 차지('11년 기준, IEA)

○ 러시아, 미국, 남미 등의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동북아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합중

○ **(러시아)** 동시베리아-태평양송유관 완공으로 최대 연간 3억배럴 공급

○ **(미국)** 타이트오일, 샌드오일 등 비전통원유 생산 증가를 배경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유수출 논의 확대

○ **(남미)** 베네수엘라 등 주요 산유국이 동북아 원유수출을 목적으로 파나마 운하와 태평양 인근 물류인프라 확보 노력중

MOTIE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# □ 동북아시장에 대한 싱가포르 오일허브의 영향력 축소

○ 수요 급증에 따라 **동북아시아 석유시장이 분리**되면서, **싱가포르는 동/서남아지역 오일허브로 위상 변화**

* 싱가포르의 동북아 수출물량 비중 : ('06년) 18.4% → ('11년) 9.1%

○ 동북아지역 신규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**동북아지역 석유저장시설 확보경쟁이 심화**

* 사우디, UAE, 브라질 등은 오키나와 저장시설을 임차중이며, 알제리, 노르웨이, 아제르바이잔 등은 석유공사 국제공동비축 활용중

* 보팍, 오드펠, 오일탱킹 등 탱크터미널 운영사들은 현재 한중일 3국에 총 14.7백만배럴의 저장시설을 운영중이며, 향후 시설투자 확대 계획

□ **동북아시아 신규 오일허브 입지로는 한국이 가장 유리**

○ **지정학적 위치, 세계적 규모의 정제공장**, 천혜의 항만조건 등 고려시 오일허브 형성에 최적 판단

* 세계 10위권 규모의 단일 정유공장중 3개가 국내 정유사의 공장이며, 한국의 단위 공장당 정제능력은 일본의 3.6배(일본 16.7만B/D, 한국60.8만B/D)

○ 중국은 얕은 항만수심, 연 50일에 이르는 휴항일수(안개, 결빙 등), 내수에 미치지 못하는 정제력 등의 문제가 있으며

- 일본은 잦은 자연재해와 높은 항만물류비가 약점으로 지적

**< 한중일 오일허브 입지여건 비교 >**

| 구분 | 운임 ($/B) | 정제비 ($/B) | 잉여정제력 (천B/D) | 항비 ($/5만톤) | 평균수심 (m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한국 | **1.37** | **2.33** | 484 | **20,157** | **20.6** |
| 중국 | 1.38 | 6.12 | **-344** | 32,882 | **16** |
| 일본 | 1.43 | 3.12 | 1,870 | **35,501** | 18 |

○ **글로벌 탱크터미널 운영사**와 **중국 석유사**들도 우리나라에 석유 저장시설 향후 투자확대 계획

* 보팍(Vopak)은 울산북항사업 추진을 위한 합작법인 「코리아오일터미널(주)」에 기투자, 오드펠(Odfjell)은 온산 저장시설에 57백만불 추가투자 검토

* 중국항공석유는 「오일허브코리아여수(주)」에 기투자, 시노펙은 울산 투자 추진중

○ 우리나라에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시 **유치 가능한 석유 물동량은 연간 최대 3.9억~4.5억B 수준**에 이를 것으로 추정

◇ **국제 석유수급 환경 변화,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 등으로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**

➡ **석유 중계가공무역 활성화로 물류, 트레이딩, 금융 등이 융복합된 에너지 창조경제 실현 견인**



# III 한국의 오일허브 잠재력 평가와 문제점

## 1. 오일허브의 성공요인

□ **3대 성공요인**은 ① 대규모 저장시설과 가공설비, ② 과감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, ③ 선진 금융시스템 확충임

□ 세계 3대 오일허브는 지정학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오일허브로 부상

○ 미국 걸프연안과 유럽 ARA는 대규모 석유생산지/소비지 인근에 조성된 저장시설을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성장

- 트레이딩과 금융서비스는 시카고(CME), 뉴욕(NYMEX), 영국(ICE) 등 금융 중심지에서 이루어짐

○ 반면 싱가포르는 **정부주도의 명확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설정**을 통해 비교적 단시간에 아시아지역 오일허브로 급부상

**< 싱가포르 사례 >**

○ 정부 주도로 80년대말부터 아시아 석유물류 중심기지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주롱섬에 정책적으로 오일허브를 조성

⇒ **10년이라는 단기간에 세계 3대 오일허브로 부상**

○ 주요 전략

- 주롱섬에 **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조성과 저장시설 구축**

- **획기적 규제완화와 유인책**을 통해 주요 석유기업, 트레이더, 탱크터미널社, 가격평가社, 투자/선박회사 등 유치

* 법인세 인하, 관세/유류세 국내반입시까지 유예, 믹싱/블렌딩 허용 등

- **금융허브 전략과 병행 추진**으로 트레이딩/금융서비스 역내화

* 선물거래는 활성화되지 않았으나, Platts 등 전문기관에 의한 가격고시체계 정착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# 2. 한국의 오일허브 잠재력 평가와 문제점

□ **(상업용 저장시설 부족)** 에너지안보목적의 석유비축시설(1.4억배럴)은 확보되어 있으나, 상업적 저장시설은 여전히 부족

* 연간 4.5억 배럴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상업용 탱크터미널 증설 필요

□ **(다양한 규제)** 석유혼합(Blending), 국내수송 등 석유거래와 관련한 규제가 많아 석유거래 활성화가 어려움

**< 국내외 업체들이 애로를 호소하는 규제 사례 >**

○ (**석유사업법**)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것은 정제업자만 가능하며, 수입사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(수입사등도 허용 필요)

○ **(과세/환급)** 원유, 석유제품을 국내통관시 과세하고 정제·가공후 수출할 때 환급함으로써 금융비용 발생(과세보류상태에서 가공허용 필요)

○ **(보관)**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유종을 고위험(휘발유/가스)에서 저위험(중유)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7일전 승인 필요

○ **(카보타지(Cabotage)원칙)** 내항간 운송은 자국 해운사 사용이 원칙이며, 외국 선박 활용시에는 40일전에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(허가기간 단축 필요)

□ **(투자 인센티브 부족)** 국제적인 석유 트레이딩 전문회사와 트레이더가 필요하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 부족

*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인세감면(5년간 100%, 2년간 50%)은 그린필드형 공장유치중심으로 금융 등 서비스업은 임대료 지원 수준임

□ **(금융기능 미흡)** 석유트레이딩 지원을 위한 금융기능은 거의 초보수준

* 저장시설 구축,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오일허브化에 성공하더라도 **트레이딩, 금융서비스 기능은 홍콩, 상하이 등 역외 금융중심지에 형성** 가능성

**혁신적인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 근본적 전략 필요**



# Ⅳ 추진경과

□ 지리적 이점 등을 배경으로 국제 석유물류 허브 가능성에 대해 **초기 논의 시작**('99년~)

□ **'13년 새정부의 공약[1]과 국정과제[2]**에 오일허브 공약 포함

1) 울산지역 공약1 : 동북아오일허브 구축 및 석유화학 신르네상스 사업으로 재도약

2) '안정적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'의 단위과제(동북아에너지연계망 구축)

○ 이에 따라 **상업용 저장시설 구축**을 중심으로 **사업 본격 시행**

* 여수 저장시설 구축 완료('13.3월), 울산북항 하부시설 기공식 개최('13.11월), 울산북항 저장시설 구축/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합작투자법인 설립('13.12월)

□ **석유거래활성화 여건 조성 관련 제도개선과제 발굴** 본격 추진

○ 국내외 탱크터미널 운영사, 석유트레이더 등 대상으로 오일허브 성공요인과 국내 사업 관련 애로사항 등 조사/분석('13.6월~)

○ 분야별 전문기관 검토로 실행가능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**관계부처회의('13.11월)와 공동연구*** 실시

* 에너지경제연구원, 조세재정연구원, 자본시장연구원, 해양수산개발원 등 참여

⇒ **동북아오일허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와 실행방안 도출**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 Ⅴ 동북아 오일허브 비전과 추진전략

**비전**

**「동북아 에너지 중심국가」로서의 새로운 국가위상 확보**

**목표**

◈ 에너지와 물류, 금융의 창조적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

◈ 과감한 규제완화와 비즈니스 여건개선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통상국가 도약

**추진전략**

물류허브 → 트레이딩허브 → 금융허브

**4대 추진과제**

| | |
|---|---|
| 상업용 저장시설 확보 | · 총 36.6백만B 규모의 탱크터미널 건설<br>· 유휴 비축시설의 상업적 활용 확대 |
| 석유거래관련 규제완화 | · 석유 관련 과세/환급절차 간소화<br>· 블렌딩, 해운, 저장 등 관련 규제의 포괄적 완화 |
| 트레이더 유치 인센티브제공 | · 석유트레이더에 적합한 업역 신설<br>· 트레이더 국내유치에 대한 세제혜택 근거마련 |
| 석유거래 관련 금융인프라구축 | · 석유거래 관련 금융서비스 확대와 규제 완화<br>· 청산소, 거래소 등 관련 금융인프라 적기구축 |



## 1 상업용 저장시설 확보 (산업부/해수부)

□ 1.5조원 민자 투입을 통해 '20년까지 연간 4억B의 물동량*을 처리하는 **탱크터미널(총 36.6백만B)을 건설**

* 한·중·일 3개국 총 석유소비량 16.4백만B/D의 6.7% 수준

< 석유물류인프라 구축계획 >

| 구 분 | 여 수 | 울 산 | |
|---|---|---|---|
| | | 북 항(1단계) | 남 항(2단계) |
| 사업부지 | 262천㎡ | 295천㎡ | 604천㎡ |
| 사업기간 | 2008~2012 | 2010~2016 | 2015~2020 |
| 사업규모 | 820만B(원유 350, 제품 470) | 990만B(제품) | 1,850만B(원유) |
| 접안능력 | 4선석(1~20만톤) | 5선석(1~12만톤) | 3선석(5~30만톤) |
| 총사업비 | 5,170억원(민자) | 5,085억원(민자) | 9,948억원(민자) |

○ **(여수)** 오일허브코리아여수(주) 설립을 통해 탱크터미널 건설 완료 후 **상업운전 개시**('13.3월)

○ **(울산) '16년까지 북항 저장시설/항만접안시설 구축을 완료**하고, 남항사업은 북항사업과 연계하여 세부계획 수립/추진('14년~)

< 울산 물류인프라 구축 추진계획 >

| 구분 | 주 요 내 용 | 완료시기 |
|---|---|---|
| 북항 | ㅇ 기본/실시설계 완료<br>ㅇ 하부 항만 접안시설 준공<br>ㅇ 상부탱크터미널 설계 및 준공 | '14년 말<br>'16년 하<br>'16년 말 |
| 남항 | ㅇ 북항과 연계방안 및 사업추진방안 마련<br>ㅇ 상·하부시설 설계 및 공사 | '14년 말<br>'15~'20년 |

□ 필요시 **정부비축시설 민간대여**로 2,000만배럴 수준의 저장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**싱가포르 추월**

* 싱가포르 저장시설은 52.2백만배럴 규모, ARA는 87.4백만배럴 수준

**기대 효과** **세계3대 오일허브 수준의 상업용 탱크터미널 확보로 물류허브 도약 기반조성**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# 2 석유거래 관련 규제완화

### 가. 오일허브 반출입 관련 과세/환급체계 개선

**< 현재 >**

□ 현재 원유 수입시 관세/수입부과금, 제품 판매시 유류세를 우선 납부하고, 제품 수출시 각종 세금을 환급

○ 유류세가 납부된 수출제품의 환급시 **관세/부과금은 제품의 보세구역 반입시** 이루어지나, **유류세는 수출용 선박에 선적시 환급**

○ 수출용 제품의 보세구역 반입 이후 선적시까지의 **환급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석유 트레이더가 부담**해야하는 상황

* ARA 소재지인 EU지역은 보세구역에서 관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의 [illegible]

* 싱가포르의 경우 정유사와 탱크터미널을 특수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블렌딩, 부가가치행위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각종 유류세 부과도 [illegible]

**< 개선 >**

□ **과세보류 상태**에서 원유수입·정제후 저장시설로 자유롭게 이동/혼합이 가능토록 **정유시설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**(관세청/산업부, ~15년)

○ 보세공장 전환에 따라 **정유사의 행정비용이 커지는 것을 방지**하기 위해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등을 통해 **업체 자율성* 최대 보장**

* 보세공장은 제조·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 등 물품의 반출입, 사용, 처분에 대해 전산신고·관리하고 세관은 재고조사를 통한 사후 적정성 확인

| 기대 효과 | **석유수출입 관련 행정·금융비용 대폭 절감**<br>**(현재 연간 환급액 약 1조 4천억원)** |
|---|---|



### 나. 석유류 블렌딩 등 부가가치활동 허용 확대

**< 현재 >**

□ 관세법/석대법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**수출 목적의 석유 제품에 대한 색상보정, 블렌딩 등 부가가치활동 규제 완화 지속 추진중**

* 관세법상 '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' 개정('13.6월)으로 보세구역內 수출용 석유제품에 대한 색상보정 등 보정작업 일부 허용(HS품목 변경은 불가)

*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('14.1월)으로 보세구역 내에서 수출용 석유제품제조를 위한 블렌딩이 허용됨

○ 그러나 아직까지는 **내수용 제품을 위한 블렌딩 등은 제한**되며, 수출용이라고 하더라도 **제품의 블렌딩방식*은 여전히 규제**

* 현재는 최종 제품의 품질기준뿐만 아니라 석유/석유화학제품/첨가제 등의 혼합/첨가 방식까지 규제(보정행위 장소, 사용제품 명칭/수량, 보정방법 등을 검사기관에 사전통지 의무화, 석대법 제26조 및 시행규칙제33조)

* 싱가포르와 ARA는 제품의 목적지 등에 모든 형태의 부가가치활동 허용

**< 개선 >**

□ 정제시설의 **보세공장 지정** 및 탱크터미널 밀집지역에 대한 **종합보세구역 지정시 관세법상 부가가치행위 규제문제 해소** 가능

* 보세공장에서는 외국제품에 대한 부가가치행위가 제한 없이 가능함

□ 수출용/내수용 여부, 블렌딩 방식 등에 관계없이 **포괄적인 부가가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석대법상 규제의 단계적 완화**('14년~)

*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수출입업자 등의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(품질보정행위허용 → 부가가치활동 허용 → 내수용 허용)

* 석유류 부가가치 활동 허용시기와 정유시설 보세공장 특허 시행을 연계 추진

| 기대 효과 | **부가가치활동 허용 확대로 수요자의 다양한 품질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창출 가능** |
|---|---|

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# 다. 화주의 자유로운 운송수단 선택 확대

**< 현재 >**

□ 석유제품 운송에는 5만톤급 이상 대형선박이 필요하나 해운법, 관세법 등을 통해 **국내항간 선박 운행을 규제**

○ (해운법) 국내 해운산업 보호/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**외국적외항선의 국내항간 화물운송을 규제**하고 있음

*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국적 외항선을 용선하여 국내항간 석유제품을 운송할 경우에는 40일전 용선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함

* 내국운송불허제도(Cabotage) : 자국내 해운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적선의 국내항간 운송을 제한하는 제도로 국제적으로 보편화(미국의 경우 미국內건조, 미국시민권자 소유, 미국인 선원 탑승을 의무화(존슨법))

○ (관세법) 외항선에 의한 외국물품의 국내항간 운송에는 제약이 없으나, **동일항계내(예: 울산항→울산항) 항만간 이동은 불가**

* 동일항계내 이동의 경우 출항신고를 한 선박이 같은 항만에 다시 입항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환적화물의 경우에도 불가

* 정제시설의 보세공장 특허시에는 동일항계내 이동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

**< 개선 >**

□ **해운법상 내항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 허가신청기간을 단축**하여 트레이더의 원활한 화물수송 지원(해수부 고시, '14.6월)

* 카보타지 원칙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운송은 제한 허용중이나, 원활한 운송을 위해 허가절차 완화 필요(현재 40일전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허가 필요)

□ 중장기적으로는 동일항계내 운송제약문제 해결을 위해 **정유사와 탱크터미널, 탱크터미널과 탱크터미널간 파이프라인 연결 추진**

| 기대 효과 | 석유 운송수단 확대에 따라 물류경쟁력 강화 |
|---|---|



## 라. 국가석유비축자산을 활용한 석유트레이딩 활성화

**< 현재 >**

□ **비축유 활용범위 제한***으로 비축자산의 트레이딩활용 제약

* 「비축유및비축시설운용기준」: 트레이딩과 대여는 총비축물량의 각 15% 이내 (통상 트레이딩 실적은 15% 수준, 대여 실적은 3~5% 수준)

**< 개선 >**

□ 비축유의 트레이딩과 대여 활용범위를 **"총 비축물량의 각각 15% 이내에서 30% 이내로 통합"**하여 석유시황에 따른 탄력적 운용

□ 비축시설 대여 요건에 **"국내기업의 해외생산 원유, 석유제품의 국내도입"**도 추가하여 비축시설 대여 활용범위도 확대

* 현재 총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4,000만배럴 규모 저장시설을 국제공동비축에 활용중

| 기대 효과 | 오일허브 저장시설 추가확보와 상업용 석유 물동량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성 확보 |
|---|---|

## 마. 탱크 보관 석유제품의 유종/수량변경 간소화

**< 현재 >**

□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**탱크에 보관중인 석유제품의 유종·수량 변경시 7일전**에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**승인을 의무화**

○ 위험도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신고가 의무화됨

**< 개선 >**

□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유종·수량 변경시 **신고·승인 규제를 고위험도 유종으로 변경시에만 적용**(소방방재청 고시, '14.12월)

| 기대 효과 | 탱크터미널 업체의 행정비용 절감으로 원가경쟁력 향상 |
|---|---|

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# 3 석유트레이더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

### 가. 석유트레이더의 법적지위 마련

**< 현재 >**

□ 현재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진출시 **국내 법인설립과 석유 수출입업 등록 필요**

* 통관, 과세/환급 등을 위해서는 국내 법인등록이 필요하며, 석유류 수출입을 위해서는 저장시설 요건(최소5천㎘이상)을 구비하여 석대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필요

○ 트레이더는 **법인설립을 기피**하는 경우가 많으며,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도 **법정요건을 구비한 수출입업 등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**

**< 개선 >**

□ 국내 법인설립을 희망하는 트레이더를 위해 정제업, 수출입업, 판매업 등 석대법상 3가지 업태 외에 **트레이더에 적합한 업역 신설**('14.12월)

### 나. 트레이더 등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

**< 현재 >**

□ 글로벌 트레이더의 유치를 위해서는 교육·주거 등 정주요건 정비 외에 국내 법인설립에 대한 **세제혜택 제공 필수적**

○ 싱가포르는 세제지원을 통해 트레이더를 유치하고 있으나, 우리나라는 **모델조세협약국으로 특정업종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이 어려운** 상황

* 싱가포르의 경우 연간 1억USD이상 거래, 싱가포르내 기업지출규모 3백만SGD 이상, 3명이상 트레이더 고용시 10% 법인세율 적용(통상 법인세율은 17%)



**< 개선 >**

□ **해외 트레이더들의 국내 유치**를 위해, 국내법인 설립시 **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혜택** 부여 검토(산업부/기재부, '14.12월)

○ '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(기재부고시)'중 **'산업지원서비스업에 '석유류트레이딩업'**(매매계약 등 단순 중개업 제외)**을 추가**하고 현행 조세지원체계 내에서 지원 방안 검토

### 다.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

**< 현재 >**

□ 동북아 석유물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수의 트레이더가 필요하나 싱가포르 트레이너의 역내 이전에는 한계

○ 현재 국내 트레이딩 전문과정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, 정유사나 소규모 수출입업자가 필요 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상황

* 현재 전문과정으로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(UNIST)의 오일트레이더 과정이 유일

**< 개선 >**

□ **글로벌 상품트레이딩(가칭) 전문과정을 마련**하고 **자격증 부여** 등을 통해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(산업부/교육부, '14년~)

○ 과정에 대한 지원자/기업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해당과정 이수자들에게 **국가자격증 부여** 및 **공공부문 조달 등 참여**

| 기대 효과 | **트레이딩 기능 역내화를 통해 석유거래 허브로 도약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** |
|---|---|

## 4 석유거래 관련 금융규제 완화 및 인프라 정비

### 가. 석유거래 금융지원 확대 및 외환거래 규제완화

□ **석유화학제품 등을 대상으로 한 동산담보대출 상품 출시**를 위해 은행권과의 협력 및 관련 제도의 정비 추진(산업부/법무부, '14년말)

* 글로벌 트레이더들은 일반적으로 거래물품을 담보로 하는 은행대출과 신용공여 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기관의 관련 서비스는 거의 없는 상황

□ 석유류·파생상품 트레이딩 관련 **외국환거래 신고 의무의 완화 검토**(기재부)

* 현재 석유/석유화학제품 트레이딩 대가를 상계시 은행에 신고 필요

### 나. 역내 금융인프라 확대

□ 저장시설 구축, 제도개선 등과 병행하여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**가격평가, 청산·거래소 등 인프라의 적기 조성**

* 오일허브 관련 금융 기능이 특정 지역에 형성되면 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, 트레이더 유치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더불어 기본적인 금융인프라 구축이 필요

○ Platts, Argus 등 **해외 주요 가격평가기관 유치** 추진('15년~)

* 초기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동북아오일허브를 통해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조달가격을 고시하여 한국 기준가격 형성 유도

○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을 담당할 **국내청산소 육성**(금융위, '16년~)

* G20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중 표준화된 거래에 대해 CCP(Central counterparty, 중앙청산소) 청산을 의무화할 것을 합의('09.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)

○ 장외거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**파생상품 상장 추진**(금융위, '16년~)

| 기대 효과 | **석유거래 관련 금융기능 역내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석유물류 중심지에서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 유도** |
|---|---|



## Ⅵ 기대효과

□ **(정량적효과)** 저장시설 건설/운영의 경제효과는 **단기적으로 3.6조원, 장기적으로는 총 60조원**에 이를 전망('14.2월, 보스톤컨설팅그룹)

○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이 완성된 **'20년 이후 연간 250억불 이상** 석유류 중계가공수출 가능

* 산출근거 : 4.5억배럴(연간물동량) × 0.5(물동량 50% 수출) × 115$/B(수출단가)

□ **(정성적효과)** 석유거래 **연관산업의 발전, 석유수급 효율성 제고,** 비축 증대에 따른 **석유안보 강화** 등 효과 기대

○ **위탁정제/가공 등 신규 사업영역 확대, 액체물류 처리시설과 파이프라인 확충**, 석유거래 관련 **금융상품 활성화**

○ 국제 석유시장가격 형성으로 **국내 석유유통시장의 거래투명성이 제고**되고, 신규 유종 거래 확대에 따라 **아시아프리미엄* 축소** 기대

* 중동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지역으로 원유수출시 중동의 산유국들이 적용하는 할증요금

○ 국내 저장 원유/석유제품이 많아지는 **간접비축 효과**와 근거리 확보 물량 증대로 **석유안보 강화**와 **가격변동성 대응능력 제고** 기대

/끝/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**참고** **부처별 실행과제**

| 실천 과제 | 시한 | 담당부처 |
|---|---|---|
| ▪ 포괄적 부가가치활동 허용 | '14년~ | 산업부 |
| ▪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 | ~'15년 | 관세청, 산업부 |
| ▪ 내항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외항선 용선규제 완화 | '14.6월 | 해수부 |
| ▪ 파이프라인에 의한 석유제품의 보세운송 확대 | - | 산업부/관세청 |
| ▪ 비축유 및 유휴비축시설 활용 | '14.7월 | 산업부 |
| ▪ 저장탱크 운용제도 개선 | '14.12월 | 소방방[illegible]청 |
| ▪ 트레이더에 적합한 업역 신설 | '14.12월 | 산업부 |
| ▪ 트레이더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| '14.12월 | 산업부, [illegible] |
| ▪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과정 마련 | '14년~ | 산업부, 교육부 |
| ▪ 석유거래 관련 신용대출 활성화 | '14.12월 | 산업부, 법무부 |
| ▪ 석유거래 관련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완화 검토 | - | 기재부 |
| ▪ 가격평가기관 국내 유치 | '15년~ | 산업부 |
| ▪ 파생상품 청산을 위한 청산소 육성 | '16년~ | 금융위 |
| ▪ 파생상품 상장 추진 | '16년~ | 금융위 |



**별첨 4** **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(요약)**

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

이 자료는 2014.3.12일(수) 10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본 자료는 사전 보도 편의를 위한 것으로
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# 지역 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(요약)

MOTIE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2014. 3. 12.

관계부처 합동

# 순 서


Part 1 지역 주도 발전 전략

Ⅰ. 추진배경 및 방향 ..... 1

Ⅱ. 지역발전 추진방안 ..... 3

Part 2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

Ⅰ. 기본방향 ..... 5

Ⅱ.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 ..... 6


# Part 1 지역 주도 발전 전략

## Ⅰ. 추진배경 및 방향

### (1) 추진배경

□ **(지역활력 감퇴)** 지역은 **농어촌** 뿐 아니라, 지역의 주요 생활거점인 **지역도시를 중심**으로 인구감소 등 **쇠퇴 현상** 지속

○ 지난 10여년간 **생산과 일자리 증가가 특정지역에 편중**되고, 최근에도 일부 지역은 **생산·취업자 수가 정체 또는 감소**

* '13년 광공업생산증가율(%) : (수도권)4.9 (충청권)2.5 (호남권) △4.3 (대경권) △6.2 (동남권) △1.9
'13년 취업자증가율(%) : (수도권)1.3 (충청권)4.6 (호남권)2.3 (대경권)0.0 (동남권)1.2

⇨ 「**일자리 부족 → 소득창출 기회 부족 → 인구유출**」의 악순환

□ **(기존 지역정책의 한계) 중앙정부 주도**의 **획일적 방식**으로 추진되어 실질적 효과 미흡

○ 정부가 **인위적으로 5+2 광역경제권**을 **설정**하고, 대규모 개발 위주의 지역정책 추진

⇨ **체감도가 낮고,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** 유인에도 **한계**

□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**생활체감형 지역정책**과 함께, 일자리 창출을 위한 **기업의 지역투자 촉진 정책 병행** 필요

○ 지난 10년간 **지역내총생산(GRDP) 증가율이 높은 지역**은 모두 **기업투자가 활발**

< '02~'11년간 GRDP 연평균 증가율 상위 5위지역 >

| 순위 | 지 역 | GRDP 증가율* | 주요 요인 |
|---|---|---|---|
| 1 | 인천 연수구 | 18.3% | 송도 경자구역 개발 |
| 2 | 울산 동구 | 16.4% | 현대중공업 입지 |
| 3 | 충남 당진 | 15.3% | 현대제철, 동부제철 입지 |
| 4 | 경남 거제 | 14.1% | 삼성중공업 입지 |
| 5 | 경기 파주 | 14.0% | LG디스플레이 입지 |

* 통계청, 지역소득통계 활용

※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계열사 1,700여개중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은 508개(30%)에 불과하고, 매출액 100대 기업중 13%만이 지역에 소재

### (2) 추진방향

□ **(기본방향) 지역 주도**의 **맞춤형·패키지** 지역발전 정책 추진

| | 과거 정부 | 박근혜정부 |
|---|---|---|
| 정책주도 | · 중앙정부 주도 | ► **주민·지자체 주도** |
| 정책단위 | · 5+2 광역경제권 | ► **지역행복생활권** |
| 추진방식 | · 하향식 정책 | ► **상향식·주민체감 정책** |
| 지원방식 | · 부처별 산발적 지원 | ► **맞춤형·패키지 지원(부처협업)** |

□ **(추진전략) 지역의 의견을 수렴**하여 **맞춤형으로 지원**

① **(지역)** 지역별 **발전전략 수립** 및 **프로그램 마련**

○ **(시·군) 지역행복생활권 구현** : 2개 이상 시·군이 **자율적으로 행복생활권**(56개)**을 설정**하고, 권역별로 **체감도 높은 사업 제안**

○ **(시·도)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** : 미래성장동력 배양을 위해 시·도 자율로 마련한 **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선정**

② **(중앙정부)** 지역이 발굴한 행복생활권 및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**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**

○ 지역투자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**규제개선 및 애로해소**

○ 지역이 발굴한 사업에 대해 **맞춤형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**하고, 자금·인력 등 지역의 불리한 **기업유치 인센티브 강화**

○ 혁신도시, 기업도시 등 기 추진중인 **거점 개발 활성화**

□ **(추진체계)** 지역발전 비전·계획 수립, 사업발굴, 집행 등의 全과정에서 **주민과 지자체가 중심**에 설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



## Ⅱ. 지역발전 추진방안

### 1. 시·군 : 지역행복생활권 구현

□ **(지역행복생활권)** 일자리·교육·의료·복지·문화 등 **기본생활서비스가 충족**되어 **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**

○ 2개 이상 시·군이 **자율적 협약**을 통해 **생활권을 설정(56개)**

○ 인구, 생활권 특성 등에 따라 **3개 유형**으로 구분(시범 2개소 제외)

| 유 형 | 특 징 |
|---|---|
| ① 중추도시생활권 (20개) | 지역중추 기능을 하는 광역시 등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 (예: 충북 청주시+인근 5개 군) |
| ② 도농연계생활권 (13개) | 지역거점 역할을 하는 중소도시와 연계성이 높은 인근 농어촌지역으로 구성 (예: 경북 영주시+봉화군) |
| ③ 농어촌생활권 (2개) | 특별한 중심도시 없이 농어촌지역이 연계하여 구성 (예: 전북 무주군+진안군+장수군) |

□ **(생활권 사업제안 현황) 56개 생활권** 주도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**사업 총 2,146건* 제안**(생활권별 평균 38건)

* 분야별로 전통산업·산단·관광자원 등 지역산업 육성(626건), 마을만들기 등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(551건), 상·하수도 등 기초생활인프라 구축(445건) 순

□ **(향후 추진계획)** 지역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**지원대상 사업 선정**(~'14.7월)

○ 빠른 시일 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, 창조적 발상에 의한 특색 있는 사업 등은 선도사업으로 관리('14년 650억원)

○ **'14년 예산집행 과정에서 반영가능 사업**은 **우선지원***, **'15년 예산**부터 본격 반영**

* '14년 예산 기준 국비 8.1조원(128개 사업) 연계활용 가능

**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생활권 지원방안을 반영

## 2. 시·도 :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

□ **(추진전략)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**에 따라 시·도별 특화 프로젝트를 **상향식으로 선정, 시·도와 중앙정부가 협업**으로 추진

| 지방자치단체 주도 | | 중앙정부 지원 |
|---|---|---|
| ① **프로젝트 기획** | ⇨ | ① **기반시설 조성 지원** |
| ② **입지 지원** | ⇦ | ② **S/W 측면의 재정지원** (기술개발, 사업화 지원 등) |
| ③ **기업 유치활동 등** | | ③ **제도개선(규제개혁 등)** |

□ **(선정방식)** 시 도,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중앙 지방이 함께 **사업의 효과성, 파급력** 등을 감안하여 선정

○ 지역발전 비전과의 부합성 등 「**특화프로젝트 선정기준***」 적용

* ①시·도 발전 비전과 부합, ②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·조기에 가시적 성과 도출, ③지역 창조경제 기반 조성에 기여, ④지역공약 실현

○ **타당성이 확보**되거나 **추진여건이 기 조성**된 사업에 우선순위 부여

□ **(향후 추진계획)** 시·도별 우선 **1개씩 총 15개의 프로젝트 후보군** 마련·논의중 → 지역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**7월말까지** 선정 후 정부 지원계획 확정

○ **11개**(밑줄로 표시)**는 지역공약과 관련**된 프로젝트

* (부산) 영상, (대구) SW융합, (인천)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, (광주) 문화콘텐츠, (대전) 국방ICT, (울산) 친환경 전지, (경기)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, (강원) 건강생명, (충북) 바이오, (충남) 디스플레이, (전북) 농생명, (전남) 해양관광, (경북) IT융복합, (경남) 항공, (제주) 용암수 융합

○ 정부는 재정·규제완화 등을 **패키지 방식***으로 지원

* (재정)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연차별 소요재원 반영, 계속사업 조기완공 지원
(규제)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, 애로 해소



# Part 2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

## Ⅰ. 기본 방향

□ **(추진경위) '13.7월 「지역발전 정책방향」** 발표 이후, 그동안 현장방문, 투자활성화 TF, 지역에서 관계부처에 건의된 내용 등을 통해 **지역 의견을 수렴**

○ **지역행복생활권 구현**과 **특화발전 프로젝트**의 **원활한 추진**을 위한 규제완화, 인센티브 확대 등 **다양한 정책건의 제기**

(ⅰ) 중앙정부의 **획일적인 규제나 경직적인 제도운영**으로 인한 애로 해소

(ⅱ) 지역사업에 대한 **재정지원**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**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** 확대

(ⅲ) 혁신도시, 기업도시 등이 당초 목표대로 조속히 정착

□ **(추진방향) 지역 건의 내용을 토대**로 행복생활권 구현과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 지원방안을 마련중

○ **(규제완화·제도개선)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고 다수의 지역이 혜택**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**규제개선 및 애로해소** 추진

○ **(인센티브 강화)** 지역이 발굴한 사업에 대해 **효율적인 재정 지원 방안**을 마련

- 세제, 자금, 인력 등 **지역의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보강**

○ **(거점개발 촉진) 혁신도시, 기업도시** 등 기 추진중인 **거점개발을 활성화** 하여 지역투자 여건 개선

## Ⅱ.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

### 1.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

#### (1) 도시지역 제기 과제

1 **(개발제한구역 규제 합리화)** GB 해제지역에 대한 **용도제한 완화**

○ **취락지역**은 주변여건(시가지 인접지역 등)에 따라 **상업시설 설치가 가능**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*

* (현행) 주거지역 → (개선) 준주거지역, 근린상업지역, 준공업지역도 허용

○ 개발사업자의 **임대주택 건설*** 및 **공원녹지 조성 부담** 완화**

*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 허용(공고일 이후 6월내 매각곤란시)

** 공원 인정범위 확대 : 도시공원, 녹지 → 하천, 저수지, 사면녹지 등 포함

○ GB 해제지역 개발사업시 **특수목적법인(SPC)**의 **민간출자비율을 한시적**('15년까지)**으로 확대**(1/2→2/3미만)하고, 민간 대행개발도 허용

☞ 17개 개발사업* 활성화로 **향후 4년간 최대 약 8.5조원** 투자 기대

* 대전, 광주, 창원, 부산 등 12개 지역 총 12.4㎢(여의도 면적의 4.3배)

2 **(민간 공원개발 활성화)** 사업자 **인센티브**를 **확대**하고 **추진절차 간소화**

○ 투자자의 **기부채납 비율을 완화***하고, 공원 **기부채납 완료 전**이라도 **수익사업 추진** 허용

* (현행) 주거지역·상업지역 시설: 80%, 녹지지역 시설: 70% → (개선) 모두 70%

○ **사업제안 단계**의 **감정평가서 제출을 생략**하고, 기본설계도를 **기본구상도(약식 설계도)로 대체**

☞ 사업 초기단계인 원주 등의 공원조성 사업(90만㎡) 본격화로 **향후 4년간 약 8,500억원** 투자 기대



3 **(지역도시재생 촉진) 규제완화·금융지원** 등을 통해 사업 추진

○ **「입지규제최소지구*」를 신설**하여 **토지용도, 건폐율·용적률 등의 규제로부터 자유**로운 도시계획 제안 허용**

* 건축물 층수제한, 용적률,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되어 자유로운 개발(예: 싱가폴 마리나베이, 동경 도시재생특구 등) 가능

** (지자체) 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구상 등 신청 → 중도위 심의 → (국토부) 지정

○ **「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」를 선정**(11개소, '14.4월)하여 **상권활성화, 생활인프라 조성, 주거환경 정비** 등을 재정지원(지자체 매칭)

4 **(도심지 주차난 해소) 주차장 공급확대**와 **수요관리** 병행

○ **(공급확대)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, 주차빌딩 입주가능업종 확대** 등을 통해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고, **공공청사·회사 주차장 외부개방** 확산

* (현행) 근린생활·상업·업무시설 등 → (개선) 주거용도까지 허용

○ **(수요관리) 공영주차장 요금**을 지역 실정에 맞게 **합리화**하여 **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**하도록 유도

#### (2) 농산어촌지역 제기 과제

1 **(농지·농업법인 규제 유연화) 경영환경 변화**에 따른 **유연한 농업경영**이 가능하도록 지원

○ 첨단 농업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**시험지·연구지·실습지 목적**의 **농지소유 허용 자격* 확대**

* (현행) 공공단체, 학교, 농업생산자단체, 농업연구기관(비영리) 등으로 엄격히 제한 → (개선) 바이오·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등으로 확대

○ 고부가가치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을 통해 **건축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**와 **범위를 확대***

* (예)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건축: (현행)10,000㎡이하 → (개선)15,000㎡이하,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 설치 허용

○ **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**하고, 농업법인간 **합병·분할 허용**

* (현행) 작물재배, 가공, 유통 사업→ (개선) 농촌관광, 휴양사업까지 확대

2 **(산지규제 완화)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 규제를 완화**하여 산지활용을 촉진하고, 여건 변화에 맞게 **산지구분 개편방안 마련**

○ 「**산림복지단지지구***」 **제도를 신설**하여 민간의 **장기체류형 산림휴양시설** 조성 등 산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

* (현행) 휴양림·병원 등 시설별 산지전용허가 필요
→ (개선) 산림문화·휴양·보건 등 복합입지 허용, 장기체류시설 조성근거 마련

○ **보전산지 내에 의료부대시설 설치를 허용***하고, **풍력발전시설 단지** 조성시 **편입 가능한 산지 면적을 확대**(3만㎡→10만㎡)

* 보전산지 내에 입지한 요양병원 등이 산지전용을 통해 주차장, 병원관리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던 애로 해소

○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**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대상을 확대***하고, **분할납부 횟수·기간 연장****

* (현행) 도로, 철도, 공원시설 등 국가·지자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 시설 → (개선) 목재체험장, 산림전시관 등 국가·지자체의 산림공익시설 포함

** (현행) 3년간 3회 이내로 납부 → (개선) 4년간 4회 이내로 납부

○ 10년 단위 **'산지구분 타당성조사'**의 **법적 근거를 마련**하고,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**산지구분 개편방안** 마련

* 현행 산지(국토의 64%)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산지(산지의 77%)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산지로 구분

3 **(귀농·귀촌 활성화)** 2030세대 대상 맞춤형 **귀농 단계별 프로그램**을 제공하고, 체류시설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**농어촌 초기 정착비용 절감**

○ **귀농전문 상담사**를 통해 귀농준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, **1:1 귀농멘토***를 지정하여 기술습득 및 농촌 적응을 지원

* 선배귀농인, 마이스터(102명), 신지식농업인(357명) 등 활용

○ 귀농거점별 '**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**'(4개 지역), **예비농업인 숙소**(귀농인의 집 300개소)를 건립하고, 귀농인 **주택구입 지원 융자**의 **금리 인하·금액 확대**(금리 연 3.0 → 2.7%, 지원한도 4 → 5천만원)

4 **(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상품화) 실태조사**를 통해 **체계적인 보존·활용방안**을 마련하고 **관광상품화 프로그램** 추진

* 보존가치가 크고 관광상품으로 개발 가능한 경우 개보수·문화재 등록 등 추진,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에 전통사찰·향교·서원 등 포함 등



## 2. 지역투자 인센티브 강화

### (1) 재정지원

1 **지역행복생활권 지원**

○ 지역위 중심으로 **타당성을 평가**하고, **유사·중복 조정** 등을 거쳐 지원대상 선정, **지역발전 5개년계획**에 반영('14.7월)

- **기존 부처별 사업 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기존 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지원**('14년 예산기준 국비 8.1조원(128개 사업) 연계활용 가능)

- **'15년 예산부터 관련 소요를 반영**하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**국가재정운용계획**('14~'18년)에도 반영

2 **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지원**

○ 중앙과 지역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하되, 국고지원 소요는 **국가재정운용계획**('14~'18년)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지원

- **계속사업**인 경우 **조기완공 추진, 신규 사업은**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**타당성이 확보** 이후 **추가 지원대상으로 선정**

3 **재정지원체계 개선**

○ **(지자체 자율재원 지속 확충) '14~'17년간 총 7.3조원**을 확충('14년 0.7조원, '15년~'17년 6.6조원)

- 지방재정 확충방안('13.9월) 등에 따라 **자율재원 확대**('14년 0.3조원, '15~'17년 4.2조원으로 '14~'17년간 **총 4.5조원** 확대)

- 국가시책사업 등에 충당해 온 **특별교부세(금) 일부**를 **자율재원**(보통교부세)**으로 이전**('14년 0.4조원, '15~'17년 2.4조원으로 **총 2.8조원**)

○ **(포괄보조방식 예산 확대)** 지자체의 **사업 선택권**을 확대

- 지자체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**포괄보조방식 예산을 확대**('14년 3.5조 → '15년 4.5조원 내외로 약 1조원 확대)

- **지역발전특별회계**를 **생활밀착형 사업 위주**로 전환

## (2)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

□ **(기업의 지방이전 지원)** 기업 본사·사업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**법인세 감면요건을 완화**하고 **적용기한도 연장**

○ 감면요건 중 **본사 인력기준에 3년의 유예기간을 신설***하고, **법인세 감면 기산점**을 이전일에서 **최초 소득발생일**로 변경

* 고용규모가 큰 기업이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: 이전년도에 본사 인력의 50% 이상 이전 → 이전 후 3년 내 50% 이상 이전

○ '14년 종료 예정인 본사·사업장 이전에 대한 **법인세 감면** 및 **대지·건물 양도차익 과세특례***의 **적용기한 연장****

* 5년간 과세이연 후 5년간 분할납부

** (현행) '14년말(본사·공장 신축: '17년말) → (개선) '17년말(신축: '20년말)

□ **(기업의 지역투자 지원)** 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할 경우 **고용창출세액공제 추가공제율**을 **1%p 인상**(현행 3% → 4%)

## (3)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 확대

□ **(도시첨단산업단지 확충) '14~'15년간 9개소 이상** 추가 지정

○ **'14년 3개소(인천, 대구, 광주)를 조성**하여 선도모델 창출, **'15년**에 지정하는 **6개소**는 **지자체 공모**('14.6월)를 통해 지정

☞ 3개소 개발 완료시 **약 2.1조원** 투자 효과 기대

□ **(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)** 지역의 **수요 및 산업특화도**에 따른 **맞춤형 산업단지*** 조성

* 의료기기(원주), 항공(진주·사천), 해양플랜트(거제), 탄소(전주), 나노(밀양) 등

○ **수요와 입지타당성**이 높은 지역은 **국가가 개발하는 산단으로 지정***하고, **일반산단**(지자체가 추진)은 **정책적으로 지원****

* 지정시 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분양, 진입도로 국비지원(100%),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(취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) 등 지원

** R&D자금 지원, 거점시설 입지 우선공급, 산단개발 인허가 절차 지원 등



## (4) 투자선도지구 신설

□ 현행 **5개 지역개발제도*를 통합**하여 「**투자선도지구**」를 **신설**하고, 지역의 **핵심프로젝트 사업**에 대한 **인센티브 강화**

* 개발촉진지구, 특정지역, 광역개발권역, 지역개발종합지구, 신발전지역

○ **(적용대상)** 지역개발사업* 중 **발전 잠재력**과 **경제적 파급효과**가 큰 지역생활권 단위 **핵심프로젝트 사업**에 적용**

* 산업단지, 물류·유통단지, 관광단지, 관광휴양시설, 항만·역세권 등

** '15년 3개소 시범지정, '17년까지 총 14개 지정 추진(시·도 생활권별 1개소)

○ **(인센티브)** 규제 특례, 자금·인프라·행정지원 등 강화

| 유 형 | 주 요 내 용 |
|---|---|
| 규 제 특 례 | ▪ 건폐율·용적률 완화 ▪ 건축법 등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<br>▪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 규제특례 적용 |
| 조세/부담금 | ▪ 취득세 등 세제감면 ▪ 개발부담금 등 7종 부담금 감면 |
| 자 금 지 원 | ▪ 입주기업 용지매입비 융자, 토지 등 임대료 감면 등 |
| 인프라지원 | ▪ 기반시설 지원, 혼잡도로·광역도로 등 도시부 SOC 지원 |
| 행 정 지 원 | ▪ 각종 인허가·사업계획 승인 등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|

☞ '17년까지 14개소 지정시 **약 2.4조원** 투자 효과 기대

## (5) 정책자금을 활용한 금융인센티브 제공

□ **(지역설비투자 펀드* 신설)** 산은·기은의 자금을 활용하여 **1조원 규모**(집행상황에 따라 추가 확대)의 **지역 전용 설비투자펀드** 조성

* 지역소재 기업이 설비투자시 일반 대출금리보다 1%p 우대하고, 지역행복생활권 및 특화발전 프로젝트 관련 기업 등에 우선 지원

2 **(모태펀드 지역계정 신설)** 모태펀드에 1천억원 규모의 지역계정을 신설하여 **지역 유망 서비스산업 창업지원펀드***로 운용

* 지원대상: 보건·의료, 관광, 소프트웨어, 컨텐츠, 물류산업 등 중심

○ 민간재원 유입을 위해 투자자에게 **우선손실충당 등 인센티브** 제공

### (6) 인력·판로·기술개발 지원 확대

1 **(인력지원) 산업기능요원 배정**시 **지역기업에 가점**을 부여*하고, **고용창출지원사업****(고용보험기금) 지원대상에 **시도별 특화업종** 포함

* (예) 군 소재(15점), 시 소재(10점), 광역시 소재(5점), 수도권 소재(2점)

** 유망창업기업, 국내복귀(유턴) 기업이 근로자 신규 채용시 인건비 일부(연 720만원(서비스업)~1,080만원(제조업)) 지원

2 **(판로확대)** 기존 **홈쇼핑 채널** 재승인(5년 주기)시 **지역 중소기업 제품**(농산물 포함)의 **편성비율 확대**(평균 7% → 15%(목표치, 예시))

3 **(기술개발 지원)** 지역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의 **연구개발자 파견 기간을 확대**(3→6년)하고, **연구소기업의 등록취소 기준 완화***

* 기준 지분율 : 20→15%, 등록취소 유예기간 연장 : 3→5년

## 3. 지역거점 개발 촉진

### (1) 혁신도시 활성화

1 **(공공기관 이전 촉진)** 이전대상 151개 기관 중 이전에 차질이 예상되는 기관(5개)에 대해 기관별 맞춤형 지원방안 추진

| 이 전 기 관 | 추 진 방 안 |
|---|---|
| 식 품 연 | ▪ 종전부동산 용도변경을 통한 민간매각 추진 |
| 국 토 연<br>에너지관리공단 | ▪ 차입을 통해 이전예정지에 청사 신축<br>▪ 차입이자는 재정 등으로 지원 |
| 한국교육개발원<br>교육과정평가원 | ▪ 수도권 잔류 임차기관들이 공동매입 |



2 **(클러스터 활성화)** LH와 협의하여 **분양가를 인하**하고 **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***을 통해 **비용절감 지원**

* 취득세 100%, 재산세 5년간 100% 감면

○ 소규모 지식서비스 기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**산학연 클러스터 내 小필지화를 허용**하고, **특성화고·산업진흥시설 등의 입주 허용**

3 **(지역인재 채용 확대)** 기관별로 이전지역 **지역인재 채용 우대정책***을 **도입**하고, **채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**하는 방안 마련

* (예) 지역인재 채용할당제, 목표제, 가점제 등

### (2) 기업도시 개발 촉진

1 **(조세감면 혜택 연장)** 입주기업에 대한 **법인세 감면 적용기한**('14년 종료예정)**을 연장**

2 **(규제개선)** 소규모 기업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**면적제한 완화***

* (현행) 330만㎡ 이상만 개발 허용 → (개선) 330만㎡ 미만도 허용

○ 외국인투자 유치용 부지 등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*에 대해서는 **부분준공**(매립준공) **방식을 통한 소유권 인정**

* 공유수면 상태에서는 담보대출, 외투유치가 불가능하여 자금 확보 애로

### (3)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

1 **(기업 등 유치) 도시첨단산단 지정** 추진, **SB**(Science Business)**-Plaza*** **유치, 지식산업센터**** **설립** 지원을 통해 첨단기업 유치 촉진

* 연구개발, 인력양성, 창업지원 등을 위해 연구하우스, 산업단지 캠퍼스, Biz connect 센터(지원기능 연결) 등이 집적된 산·학·연 통합 단지

** 제조업, IT, 지식산업시설 및 지원시설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건물

2 **(인프라 확충) 대학·병원·연구기관** 등에 대해 **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** 신규로 지원하여 **우수대학, 종합병원 등 유치**

별첨 5 제1호 안건(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)

이 자료는 2014.3.12일(수) 10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본 자료는 사전 보도 편의를 위한 것으로
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# 지역주도 맞춤형
#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

2014. 3. 12(수)

관계부처 합동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## 순 서

Part 1 지역 주도 발전 전략

Ⅰ. 추진배경 및 방향 ····· 1

Ⅱ. 지역발전 추진방안 ····· 5

Ⅲ. 향후 추진계획 ····· 17

Part 2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

Ⅰ. 기본 방향 ····· 20

Ⅱ.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 ····· 22

Ⅲ. 세부 추진계획 ····· 50

[별첨] 지역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제안사업(예시) ·· 55

# Part 1 지역 주도 발전 전략


Ⅰ. 추진배경 및 방향 ····· 1

Ⅱ. 지역발전 추진방안 ····· 5

1. 추진경과 ····· 5

2. 시·군 :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····· 6

3. 시·도 :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····· 13

[참고] 시·도별 특화프로젝트 제안내용 ····· 14

Ⅲ. 향후 추진계획 ····· 17


## Ⅰ. 추진배경 및 방향

### (1) 추진배경

□ **(지역활력 감퇴)** 지역은 **농어촌** 뿐 아니라, 지역의 주요 생활거점인 **지역도시를 중심**으로 인구감소 등 **쇠퇴 현상** 지속

○ 지난 10여년간 **생산과 일자리 증가가 특정지역에 편중**되고, 최근에도 일부 지역은 **생산·취업자 수가 정체 또는 감소**

* '13년 광공업생산증가율(%) : (수도권)4.9 (충청권)2.5 (호남권)△4.3 (대경권)△6.2 (동남권)△1.9
'13년 취업자증가율(%) : (수도권)1.3 (충청권)4.6 (호남권)2.3 (대경권)0.0 (동남권)1.2

⇨ 「**일자리 부족 → 소득창출 기회 부족 → 인구유출**」의 악순환

□ **(기존 지역정책의 한계)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방식**으로 추진되어 실질적 효과 미흡

○ 정부가 **인위적으로 5+2 광역경제권**을 **설정**하고, 대규모 개발 위주의 지역정책 추진

⇨ **체감도가 낮고,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** 유인에도 **한계**

□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**생활체감형 지역정책**과 함께, 일자리 창출을 위한 **기업의 지역투자 촉진 정책 병행** 필요

○ 지난 10년간 **지역내총생산(GRDP) 증가율이 높은 지역**은 모두 **기업투자가 활발**

< '02~'11년간 GRDP 연평균 증가율 상위 5위지역 >

| 순위 | 지 역 | GRDP 증가율* | 주요 요인 |
|---|---|---|---|
| 1 | 인천 연수구 | 18.3% | 송도 경자구역 개발 |
| 2 | 울산 동구 | 16.4% | 현대중공업 입지 |
| 3 | 충남 당진 | 15.3% | 현대제철, 동부제철 입지 |
| 4 | 경남 거제 | 14.1% | 삼성중공업 입지 |
| 5 | 경기 파주 | 14.0% | LG디스플레이 입지 |

* 통계청, 지역소득통계 활용

※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계열사 1,700여개중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은 508개(30%)에 불과하고, 매출액 100대 기업중 13%만이 지역에 소재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# [2] 추진방향

□ **(기본방향) 지역 주도의 맞춤형·패키지 지역발전정책 추진**

| | 과거 정부 | 박근혜정부 |
|---|---|---|
| 정책주도 | · 중앙정부 주도 | ► **주민·지자체 주도** |
| 정책단위 | · 5+2 광역경제권 | ► **지역행복생활권** |
| 추진방식 | · 하향식 정책 | ► **상향식·주민체감 정책** |
| 지원방식 | · 부처별 산발적 지원 | ► **맞춤형·패키지 지원(부처협업)** |

□ **(추진전략) 지역의 의견을 수렴**하여 **맞춤형으로 지원**

① **(지역) 지역별 발전전략 수립과 프로그램 마련**

○ **(시·군 단위) 지역행복생활권 구현**

- **2개이상 시·군이 자율적으로 행복생활권**(56개)을 설정하고, 행복생활권역 단위로 **체감도 높은 사업 제안**

○ **(시·도 단위)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**

- **미래성장동력 배양**을 위해 시·도 자율로 **특화발전 프로젝트** 제안

② **(중앙정부)** 행복생활권 구현 및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**맞춤형·패키지 지원**

○ 지역 투자 및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**규제개선 및 애로해소**

○ 지역이 발굴한 사업에 대해 맞춤형 **재정지원 방안을 마련**하고, 자금, 인력 등 **지역의 불리한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보강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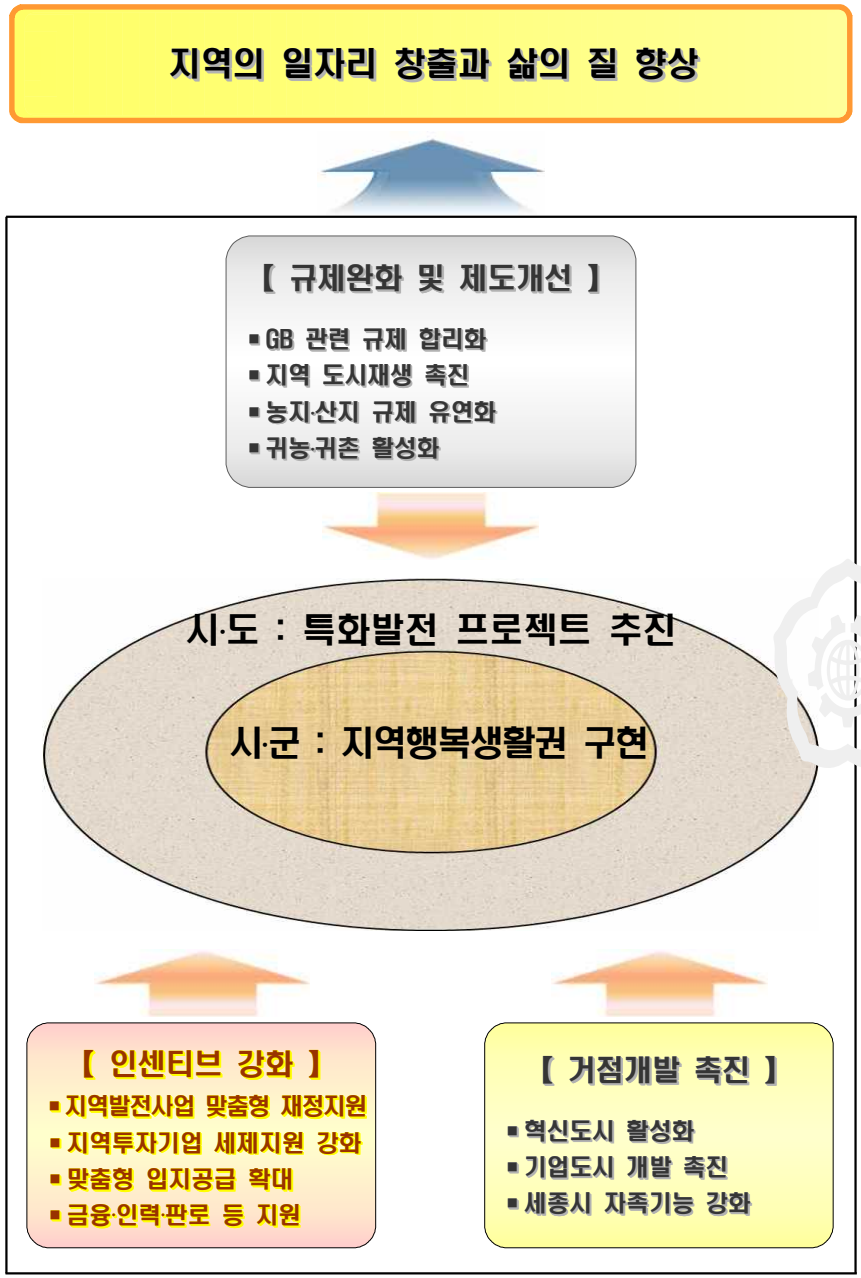
○ **혁신도시, 기업도시** 등 기 추진중인 **거점개발을 활성화**



□ **(추진체계)** 지역발전 비전·계획 수립, 사업발굴, 집행 등의 全과정에 **주민과 지자체가 중심**에 설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

| 주체 | 추진절차 | 주요내용 |
|---|---|---|
| 지자체 | ▪ **지역별 발전계획 수립** | · 지역행복생활권 계획 및 시도별 발전계획 수립<br>· 규제완화 발굴 및 특화발전 방안 마련<br>* 지역위·민간전문가·부처 맞춤형 컨설팅 |
| ↓ | | |
| 지역위<br>중앙부처 | ▪ **원스톱 패키지 지원** | · 지역위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원스톱 협의<br>· 행복생활권 및 특화발전프로젝트 패키지* 지원<br>* 재정+규제완화·제도개선+세제·금융지원 |
| ↓ | | |
| 지역위<br>중앙부처<br>지자체 | ▪ **상호 공동 추진방안 마련** | · 사업별 이행계획<br>·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실행력 담보 |
| ↓ | | |
| 민관<br>합동 | ▪ **사업관리 및 평가** | · 분기별 컨설팅·모니터링<br>· 정부업무평가 및 시도합동평가 실시<br>· 우수 생활권 선정 및 인센티브 |
| ⇩ | | |
| 기대효과 | | ‣ 생활권 참여 지자체간 공동 목표의식 및 실행력 제고<br>‣ 중앙정부의 입체적 패키지 지원으로 효과적인 계획 달성 |

MOTIE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




# Ⅱ. 지역발전 추진방안

## 1 추진경과

◇ 지역위를 중심으로 **지역과 긴밀한 소통과 협업**을 진행하여 현장에서 **지역행복생활권의 공감대와 자율적 참여**가 확산

□ **(지역행복생활권)** 인근 **지자체간 자율적 협의**로 생활권을 구성,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·제안

| | |
|---|---|
| **기본정책** | ▪ 「지역희망(HOPE) 프로젝트」 보고('13.7.18)를 통해 '지역행복생활권' 중심의 국민행복 실천과제 제시 |
| ↓ | |
| **의견수렴** | ▪ 지역순회 설명회 9회('13.7~9월), 권역별 워크샵 6회('13.10~'14.2월), 시도 방문 협의 17회('13.11~'14.1월), 부처합동설명회('14.1월) |
| ↓ | |
| **가이드라인** | ▪ 지역의견을 반영해 **생활권 구성, 사업발굴**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('13.11월) |
| ↓ | |
| **시·군 자율로 생활권 구성** | ▪ **지자체간 협약 체결**로 생활권 구성안 마련('14.1월)<br>* 56개 생활권별로 10여 차례 시·군간 협의, 의회·주민 의견 수렴 |
| ↓ | |
| **사업제안** | ▪ 생활권별로 협의체를 구성, 생활권 사업을 발굴·제출('14.2월) |

□ **(특화발전프로젝트)** 지역 주도로 **특화자원을 활용**한 발전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,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표 프로젝트를 제안

| | |
|---|---|
| **프로젝트 제안** | ▪ 미래 성장동력 배양을 위해 시·도별 2~3개의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지역위에 제안(총 37개, '14.2.14일) |
| ↓ | |
| **원스톱 부처합동검토** | ▪ 지역위를 중심으로 기재부,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검토('14.2.17~28일) |
| ↓ | |
| **중앙·지역협의** | ▪ 지역위·관계부처 합동으로 시·도별로 프로젝트 선정 및 세부과제 구체화 방안 협의('14.3.4) |

MOTIE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# 2 시·군 : 지역행복생활권 구현

◇ 각 생활권에서 **제안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**

* 대통령님 말씀<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('13.7.18), 2013 지역희망박람회('13.11.27)>

◇ 행정구역상의 시·군 경계를 넘어 **주민 실생활 중심의 56개 생활권을 지역 자율로 설정**

### (1) 지역행복생활권(이하 생활권) 개요

□ **(개념)**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자리·교육·의료·복지·문화 등 **기본 생활서비스가 충족**되어 **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**

○ 2개 이상 시·군이 **자율적 협약을 통해 생활권을 설정**

□ **(필요성)** 주민의 일상생활이 거주지 행정구역을 넘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므로 **시·군 단독으로 모든 서비스 수요를 제공하기 어려움**

○ **시·군간 칸막이를 넘어 협력**을 통해 행정수요를 충족하면서, 중복투자 및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

□ **(유형)** 인구, 생활권 특성 등에 따라 **3개 유형으로 구분**

| 유 형 | 특 징 |
|---|---|
| ① 중추도시생활권 | 지역중추 기능을 하는 광역시 등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 |
| ② 도농연계생활권 | 지역거점 역할을 하는 중소도시와 연계성이 높은 인근 농어촌지역으로 구성 |
| ③ 농어촌생활권 | 특별한 중심도시 없이 농어촌지역이 연계하여 구성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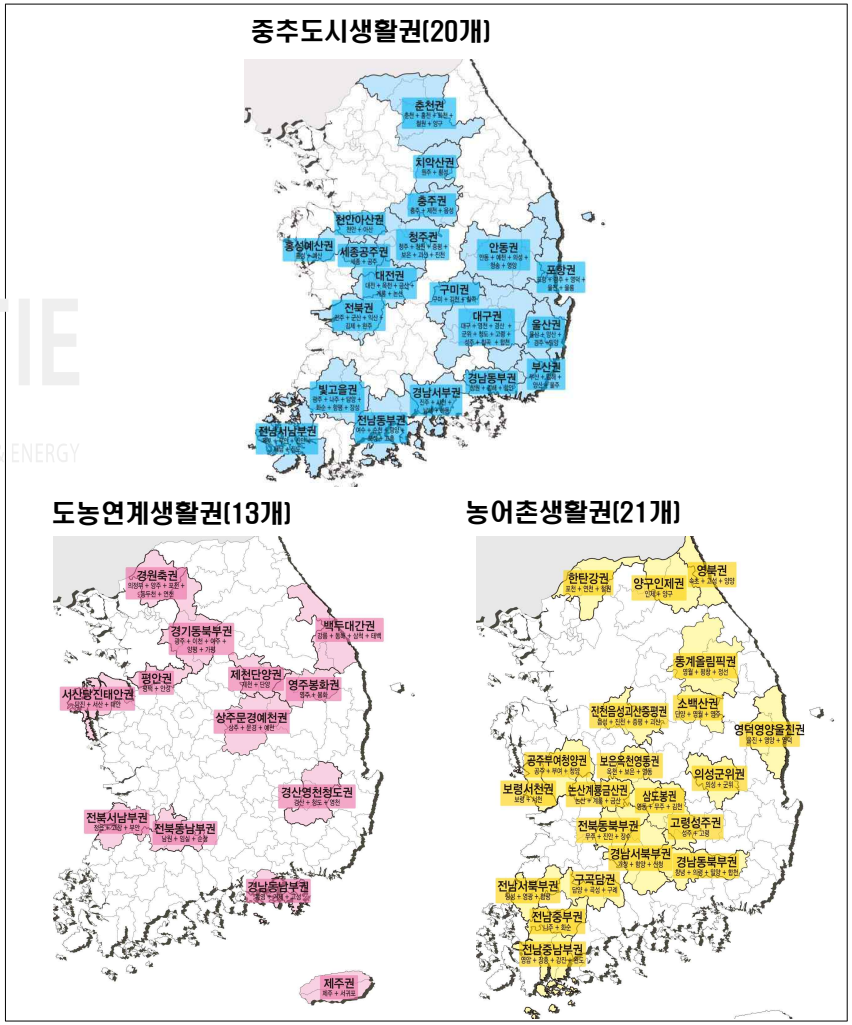


### (2) 생활권 구성 현황

□ 정부의 **지역발전정책 발표**('13.7.18) 이후, **지역이 스스로 시·군간 협약** 등을 통해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

□ 191개 시 군이 **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**

○ **중추도시 20개, 도농연계 13개, 농어촌 21개, 시범 2개**



## (3) 생활권 사업제안 현황

□ **56개 생활권** 주도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**사업 총 2,146건 제안**
(생활권별 평균 38건)

○ **(분야별)** 전통산업 육성, 산단 조성,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산업 육성이 가장 많고(626건), 마을만들기, 도시재생 등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(551건), 상·하수도 등 기초생활인프라 구축(445건)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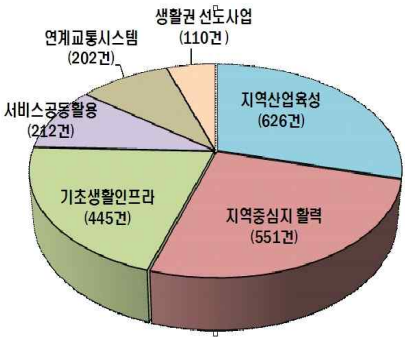
○ **(부처별 : 12개부처)** 농식품부(686건), 국토부(333건), 환경부(266건), 문화부(262건), 안행부(178건), 지역위(110건) 순

○ **(특이사항)** 다수부처 해당사업 282건*, 님비시설 사업 56건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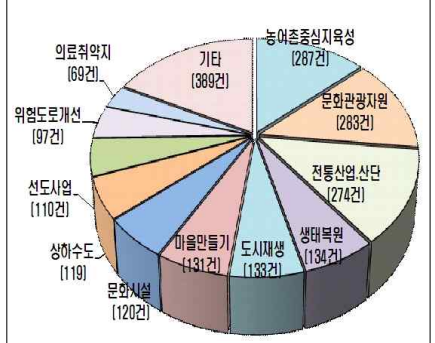
* 도시재생 133건, 일자리종합지원센터 51건, 슬레이트지붕 철거 44건 등

** 쓰레기소각시설 39건, 화장시설 12건, 가축분뇨시설 5건

< 분야별 사업수 >




< 세부기능별 사업수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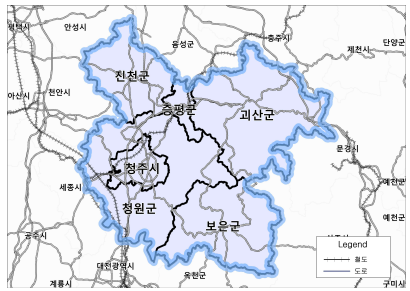





## (4) 생활권 유형별 주요사례(예시)

□ **중추도시생활권 사례 : 충북 청주시 + 인근 5개 군**

| 구분 | 인구 | 면적 |
|---|---|---|
| **생활권** | **988천명** | **2,852㎢** |
| 청주시 | 666천명 | 153㎢ |
| 청원군 | 154천명 | 786㎢ |
| 증평군 | 34천명 | 81㎢ |
| 보은군 | 34천명 | 584㎢ |
| 진천군 | 63천명 | 407㎢ |
| 괴산군 | 37천명 | 841㎢ |




○ **(생활권 구성)** 충북도청 소재지인 청주시를 중심으로 통근·통학, 산업, 문화, 행정 등이 이뤄지는 청주생활권 형성

○ **주요사업(예시)**

- **(일자리 중심Hub센터)** 6개 시·군의 일자리지원센터를 연계하여 '일자리중심Hub센터' 설치, 종합적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구직·구인 매칭강화

  * 일자리정보통합웹 구축, 일자리 버스투어, 일자리발굴단 등

- **(도시재생)** (舊)연초제조창 인근을 컬처노믹스 테마파크 조성 및 주차장 공원 확충 등 도시재생, 부처협업으로 패키지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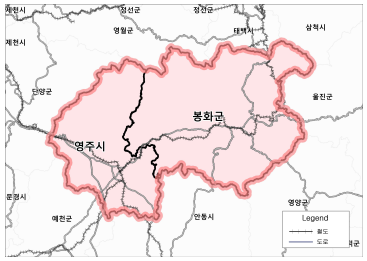
- **(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)** 청주시와 인근시군을 연결하는 버스정보시스템(BIS)을 구축하여 주민편의 제고

- **(로컬푸드 직매장 설치)** 청주시에 인근 시군의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, 친환경 농산물 제공 및 영세 농민 소득 향상

MOTIE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# □ 도농연계생활권 사례 : 경북 영주시 + 봉화군

| 구분 | 인구 | 면적 |
|---|---|---|
| **생활권** | **225천명** | **1,870㎢** |
| 영주시 | 113천명 | 669㎢ |
| 봉화군 | 34천명 | 1,201㎢ |




○ **(생활권 구성)** 영주시 중심의 통근·통학, 소백산맥·내성천 공유, '영주氏·봉화君'으로 불리며 동일생활권 형성

○ **주요사업(예시)**

- **(화장시설 공동설립)** 현재 영주화장장은 40년이상된 노후시설, 양 시군의 경계지역에 신규 화장시설(하늘공원)을 공동조성, 동일 이용료 적용

* 전국 화장시설 이용료 최대 20배 차이(성남화장장 관내 5만, 관외 100만원)

- **(산골 철도驛舍 관광자원화)** 철도驛舍(영주 7개, 봉화 13개)와 청정 자연을 공동 활용하는 관광자원을 개발(驛舍 스토리텔링 등)

- **(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공동운영)** 분만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인 영주 봉화에 분만 가능 산부인과를 공동운영

- **(작은도서관 설립)** 도서관이 부족한 봉화군에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 설립



## □ 농어촌생활권 사례 : 전북 무주군 + 진안군 + 장수군

| 구분 | 인구 | 면적 |
|---|---|---|
| **생활권** | **74천명** | **1,953㎢** |
| 무주군 | 25천명 | 631㎢ |
| 진안군 | 26천명 | 789㎢ |
| 장수군 | 23천명 | 533㎢ |




○ **(생활권 구성)** 덕유산 등 백두대간 생태자원과 고원형 레저스포츠 자원을 공유, '무진장'이라 불리며 동일생활권 형성

○ **주요사업(예시)**

- **(오지마을 상수도 공급)** 3개 군 경계지역 오지마을(5개면 6개리)에 상수관로를 연결, 수돗물 공급

- **(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설립)** 무주군 예술창작스튜디오를 리모델링, 문화예술창작 및 문화·여가공간으로 조성

- **(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지붕 설치)** 무주군·장수군의 슬레이트 지붕을 '17년까지 800동 철거(각400동), 부처협업으로 패키지 제공

* 슬레이트 지붕 철거(환경부), 농어촌 주택개량(농림부),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(복지부, 국토부) 등

- **(건강기능식품 개발)** 진안 홍삼한방, 무주 천마, 장수 오미자를 융복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개발,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



MOTIE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# 3 시·도 :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

◇ **지역 발전비전 및 전략**에 따라 시·도별 특화 프로젝트를 **상향식**으로 **선정**, **시·도와 중앙정부**가 **협업**으로 **추진**

◇ **지역발전위**에서 특화발전 프로젝트 **추진현황을 반기별로 종합 점검**

### (1) 추진전략

□ **(추진방식) 지역과 중앙정부간 역할을 분담**

○ **(지자체) 프로젝트 기획, 입지 지원**, 관련 기업 유치활동 등 **지역 특화발전 프로젝트**를 지역발전 비전에 맞춰 **주도**

○ **(중앙정부)** 재정지원을 통해 **핵심기반조성**과 **기술개발·사업화**를 **지원**하고, **규제완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** 추진

| 지방자치단체 주도 | | 중앙정부 지원 |
|---|---|---|
| ① 프로젝트 기획 | ⇨ | ① 기반시설 조성 지원 |
| ② 입지 지원 | ⇦ | ② S/W 측면의 재정지원 (기술개발, 사업화 지원 등) |
| ③ 기업 유치활동 등 | | ③ 제도개선(규제개혁 등) |

□ **(선정기준) 지역발전비전과의 부합성, 지역별 장점과 특성,** 일자리 창출 등 **지역경제 활성화 효과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○ 또한, **'지역공약'**과 **관련된 프로젝트**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**'지역공약 실현'**과도 **연계**



### (2) 시·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 주요 내용

□ 시·도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우선 시·도별 **1개씩 총 15개의 프로젝트 후보군**을 마련하여 논의 중

○ 이 중 **11개**(밑줄로 표시)**는 지역공약과 관련**된 프로젝트

* (부산) 영상, (대구) SW융합, (인천)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, (광주) 문화콘텐츠, (대전) 국방ICT, (울산) 친환경 전지, (경기)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, (강원) 건강·생명, (충북) 바이오, (충남) 디스플레이, (전북) 농생명, (전남) 해양관광, (경북) IT융복합, (경남) 항공, (제주) 용암수 융합

◇ **시·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** ◇



**참 고** **시·도별 특화프로젝트 제안내용**

| 1 부산광역시 | | 글로벌 영상산업특성화 도시조성 |
|---|---|---|
| 제안 배경 | | ▪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, 종합촬영소 이전 등을 토대로 부산을 아시아 영상 중심도시로 육성 |
| 세부사업(예시) | 지자체 자체사업 | ▪ 영상산업센터 건립<br>▪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|
| | 중앙정부 지원요구 | ▪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사업<br>▪ 디지털콘텐츠 기업 육성 지원 |

| 2 대구광역시 | | SW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|
|---|---|---|
| 제안 배경 | | ▪ 비수도권 최대 규모 SW기업 집적지인 “ICT PARK"를 대구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 |
| 세부사업(예시) | 지자체 자체사업 | ▪ SW기업 집적지 조성<br>▪ SW융합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|
| | 중앙정부 지원요구 | ▪ SW융합기술 고도화기반 조성<br>▪ 스마트콘텐츠 상용화 지원센터 운영 |

| 3 인천광역시 | | 일자리 양산형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|
|---|---|---|
| 제안 배경 | | ▪ 인천국제공항, GCF 유치 등을 계기로 인천 송도를 글로벌 교육·금융·전시·의료 등 서비스산업 허브로 조성 |
| 세부사업(예시) | 지자체 자체사업 | ▪ 송도글로벌 대학 운영 출연<br>▪ 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 |
| | 중앙정부 지원요구 | ▪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<br>▪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|

| 4 광주광역시 | | 문화 · 콘텐츠 산업 육성 |
|---|---|---|
| 제안 배경 | | ▪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KTX 개통 등과 연계를 통해 문화·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 조성 |
| 세부사업(예시) | 지자체 자체사업 | ▪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<br>▪ 광주폴리 프로젝트 |
| | 중앙정부 지원요구 | ▪ 3D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<br>▪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 |

| 5 대전광역시 | | 국방 ICT융합 기업생태계 조성 |
|---|---|---|
| 제안 배경 | | ▪ ADD 등 밀집된 국방관련 연구기반과 ICT기술을 접목하여 대전을 국방 ICT 산업 중심지로 육성 |
| 세부사업(예시) | 지자체 자체사업 | ▪ 국방 산업단지 조성<br>▪ 국방 벤처센터 설립 |
| | 중앙정부 지원요구 | ▪ 국방 ICT융합 산업 육성<br>▪ 민군겸용 기술 이전 |



| 6 울산광역시 | | 친환경 전지 융합산업 육성 |
|---|---|---|
| 제안 배경 | | ▪ 국내 수소생산의 60% 이상을 담당하는 울산을 수소기반 친환경 전지산업 메카로 육성 |
| 세부사업(예시) | 지자체 자체사업 | ▪ 세계최초 수소연료 전지차 양산체제 구축<br>▪ 수소가스 울산 제3공장 건립 |
| | 중앙정부 지원요구 | ▪ 친환경전지융합 실증화단지 구축<br>▪ 나노융합소재 사업화 지원 |

| 7 경기도 | |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조성 |
|---|---|---|
| 제안 배경 | | ▪ 통일 대비,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조성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평화생태관광 중심지로 발전 |
| 세부사업(예시) | 지자체 자체사업 | ▪ 전곡리 선사유적지 관광벨트<br>▪ 임진강변 탐방로 조성 |
| | 중앙정부 지원요구 | ▪ 임진강 유원지 조성<br>▪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|

| 8 강원도 | | 건강 · 생명 클러스터 조성 |
|---|---|---|
| 제안 배경 | | ▪ 동계올림픽 계기 휴양·레저 인프라, 청정 관광자원과 의료산업을 연계하여 건강·생명산업 메카로 육성 |
| 세부사업(예시) | 지자체 자체사업 | ▪ 제약특화 산업단지 구축<br>▪ 나노 · 헬씨에이징 특화산업단지 |
| | 중앙정부 지원요구 | ▪ 헬씨에이징 산업생태계 구축<br>▪ 웰니스 식품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|

| 9 충청북도 | | 세계적 바이오밸리 조성 |
|---|---|---|
| 제안 배경 | | ▪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을 충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|
| 세부사업(예시) | 지자체 자체사업 | ▪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<br>▪ 생명과학단지 조성 |
| | 중앙정부 지원요구 | ▪ 첨복단지 연구개발 지원<br>▪ 줄기세포 재생센터 지원 |

| 10 충청남도 | |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구축 |
|---|---|---|
| 제안 배경 | | ▪ 국내 최대 디스플레이산업 집적지인 충남을 전자·정보기기 생산의 선도지역으로 육성 |
| 세부사업(예시) | 지자체 자체사업 | ▪ 아산 · 탕정 일반산업단지 조성<br>▪ CVCE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 |
| | 중앙정부 지원요구 | ▪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지원<br>▪ Flexible 실증 산업단지 지원 |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| 11 전라북도 | | 농생명 허브 조성 |
|---|---|---|
| 제안 배경 | | ▪ 농진청 등 7개 기관 이전, 국내 최초 식품전문 국가산단 등을 바탕으로 전북을 첨단 농생명 허브로 조성 |
| 세부사업(예시) | 지자체 자체사업 | ▪ 농생명허브조성 종합계획수립 연구<br>▪ 친환경 바이오 소재 R&D 허브센터 구축 |
| | 중앙정부 지원요구 | ▪ 민간육종 연구단지 조성<br>▪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|

| 12 전라남도 | | 서남해안 해양관광 육성 |
|---|---|---|
| 제안 배경 | | ▪ 섬, 해안선, 갯벌 등 전남의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, 휴양·관광·레저산업이 복합된 해양관광 중심으로 육성 |
| 세부사업(예시) | 지자체 자체사업 | ▪ 해양관광 숙박시설 투자유치<br>▪ 해양관광 축제 |
| | 중앙정부 지원요구 | ▪ 솔라시도 기업도시개발 사업 지원<br>▪ 요트마린 실크로드 |

| 13 경상북도 | | IT 융복합 창조생태계 구축 |
|---|---|---|
| 제안 배경 | | ▪ 구미, 포항 등 IT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중심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|
| 세부사업(예시) | 지자체 자체사업 | ▪ IT 융복합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<br>▪ 경제자유구역(영천) 기반조성 |
| | 중앙정부 지원요구 | ▪ 모바일융합 연구개발 지원<br>▪ IT 융복합 생태계조성 사업지원 |

| 14 경상남도 | |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|
|---|---|---|
| 제안 배경 | | ▪ 국내 항공산업 최대 집적지(항공산업 생산액의 80% 차지)인 경남 서부지역을 항공산업의 생산허브로 육성 |
| 세부사업(예시) | 지자체 자체사업 | ▪ 항공부품 수출지원단 운영<br>▪ 항공우주엑스포 |
| | 중앙정부 지원요구 | ▪ 항공산업특화단지 육성<br>▪ 항공부품 기업 육성 지원 |

| 15 제주특별자치도 | |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 |
|---|---|---|
| 제안 배경 | | ▪ 용암수 산업단지(20만$m^2$ 규모)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(식품·음료·관광)간 시너지를 창출하여 자립형 경제기반 육성 |
| 세부사업(예시) | 지자체 자체사업 | ▪ 용암수 신사업 구상 및 발전방안 연구<br>▪ 용암수 산업단지 조성 |
| | 중앙정부 지원요구 | ▪ 용암수 활용 융복합산업 기술개발 지원<br>▪ 용암수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|



# Ⅲ. 향후 추진계획

## 1 지역행복생활권

□ **(생활권 사업 선정)** 지역위, 관계부처,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**각 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**을 검토하여 **지원대상 선정**('14.3월~7월)

① 지역주민이 **빠른 시일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**

② 생활권 사업과 **국가 정책사업과의 연계**를 고려하여 지원

③ 지역수요가 많은 사업은 **사업규모 확대, 목표 달성시기 조정**

④ 특정부처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, 창조적 발상에 의한 특색있는 사업 등은 **생활권 선도사업**('14년 650억원)으로 **지역발전위가 별도 관리**

□ **(예산반영)** **'14년 예산집행 과제에서 반영 가능**한 경우 **우선 지원, '15년 예산부터 관련 소요를 본격 반영**('14.하반기~계속)

*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생활권 지원방안을 반영

□ **(멘토링)** 지역위·부처·민간전문가 **합동 컨설팅단 구성**·지원

**< 충주권 행복일자리지원센터 부처협업 지원 예시 >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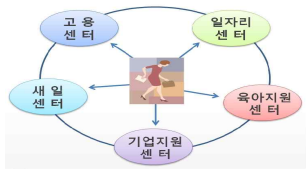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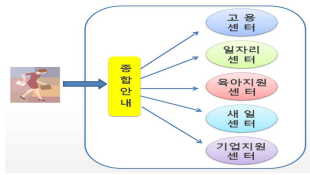
**충주권 : 행복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립**

- 내용 : 일자리 관련 모든 기관을 하나의 센터에 통합, 센터내에 기업지원센터 육아지원센터도 입주
- 여건 : 유한양행, 롯데맥주 등 56개 기업유치(기업도시 분양율 81%)
- **지자체 노력** : 충주·제천·음성 합의, 부지·설계비 등 지방비 확보, 조례 제정
- **애로사항**
  - 재정 : 센터설립비 재원 일부부족(최소 국비 필요)
  - 지원 : 부처별 별도센터 운영으로 다수기관 방문하는 불편

⇦

**정부 : 재정·부처협업**

- **재정** : 행복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(운영은 자체)
- **지원** : 고용부(고용센터), 복지부(시니어클럽), 여성부(새일센터, 육아지원센터) 등 부처협업으로 종합지원

| 센터 설치 이전 | 센터 설치 이후 |
|---|---|
|  |  |

## 2 특화발전 프로젝트

□ **(프로젝트 선정) 7월말까지** 시·도,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**프로젝트와 세부과제**를 **선정**하고, 정부 지원계획을 확정

○ 타당성이 확보되었거나 추진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사업 우선 선정

- 기획단계인 경우 예타 등 사전절차 완료후 세부과제로 추가

○ 지역발전 비전과의 부합성 등 「**특화프로젝트 선정기준***」 적용

* ① 시·도 발전 비전과 부합, ②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및 조기에 가시적 성과 도출, ③ 지역 창조경제 기반 조성에 기여, ④ 지역공약 실현

□ **(정부지원)** 재정, 규제 완화 등 **패키지 방식**으로 지원

○ **(재정지원)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연차별 소요재원**을 **반영**하고 계속사업은 추진상황을 보아 조기완공 지원

○ **(규제완화)**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**관련 규제**를 개선하고, **애로해소를 지원**

**< 특화발전 프로젝트 패키지 지원 예시 >**

**전남 비전 : 해양관광 허브**

○ 강점 :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
* 섬 전국의 66%, 해안선 전국 46%, 갯벌 1,037㎢
○ 여건 : 중국 황해연안 주요도시와 400해리
○ **지자체 노력** : 체류형 체류시설, 해양관광 축제 등 관광자원 개발
○ **애로사항**
- 재정 : 기업도시 개발재원 부족(투자마중물 필요)
- 규제 : 공유수면 관련 추가규제로 개발 지연, 투자 유치에 난항

**정부 : 재정·규제완화 지원**

○ 재정 :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지원,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 지원 등
○ 규제 : 공유수면 부분준공 허용, 우선사용 추진

**전남의 미래상 : "동북아 해양관광 허브"**

○ 동북아의 新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전

○ 2026년까지
- 생산유발 22.6조원
- 소득유발 6.3조원
- 고용유발 3.4만명





# Part 2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


Ⅰ. 기본 방향 ····· 20

Ⅱ.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 ····· 22

1.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····· 22

2. 인센티브 강화 ····· 36

3. 지역거점 개발 촉진 ····· 45

Ⅲ. 세부 추진계획 ····· 50
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# Ⅰ. 기본 방향

□ **(추진경위)** **'13.7월 「지역발전 정책방향」** 발표 이후, 그동안 현장방문, 투자활성화 TF, 지역에서 관계부처에 건의된 내용 등을 통해 **지역 의견을 수렴**

○ **지역행복생활권 구현**과 **특화발전 프로젝트**의 **원활한 추진**을 위한 규제완화, 인센티브 확대 등 **다양한 정책건의 제기**

(ⅰ) 중앙정부의 **획일적인 규제나 경직적인 제도운영**으로 인한 애로 해소

(ⅱ) 지역사업에 대한 **재정지원**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**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** 확대

(ⅲ) 혁신도시, 기업도시 등이 당초 목표대로 조속히 정착

□ **(추진방향) 지역이 건의한 내용을 토대**로 행복생활권 구현 및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분야별 지원방안을 마련

○ **(규제완화·제도개선)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고 다수의 지역이 혜택**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**규제개선 및 애로해소** 추진

○ **(인센티브 강화)** 지역이 발굴한 사업에 대해 **효율적인 재정 지원방안**을 마련

- 세제, 자금, 인력 등 **지역의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보강**

○ **(거점개발 촉진) 혁신도시, 기업도시** 등 기 추진중인 **거점개발을 활성화**하여 지역투자 여건 개선




MOTIE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# Ⅱ.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

### 1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

### 1-1 도시지역 제기과제

◇ **개발제한구역 및 민간 공원개발 관련 규제를 합리화**하여 **민간의 투자를 촉진**

◇ **도시재생사업 및 주차장 공급 확대** 등을 통해 **도시활력 제고**

#### (1) 개발제한구역(GB) 관련 규제 합리화

□ **(지역 건의내용) 개발제한구역이 해제**된 지역에 대해 실제 **개발이 활성화**될 수 있도록 **관련규제 개선이 필요**하다는 의견이 전국각지에서 제기

○ '13년말 현재,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GB 1,530㎢(전체 GB의 28.3%)가 해제되어 있으나, **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**(부산, 창원 등)

* (예시) 김해공항 인근마을은 GB에서 해제되었으나, 주거용도 위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 상업시설 등의 개발 곤란

○ 한편, 산단 주변지역이 GB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 **공장용지 확보에 애로**가 있다는 건의도 제기(광주 등)

□ **(지원방안)** GB에서 기해제된 지역에 대한 **용도제한을 완화**하되, 난개발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추진

○ **GB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에 상업시설 등 설치가 가능**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허용(도시·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, '14.6월)

* (현행) 주거지역 → (개선) 준주거지역, 근린상업지역, 준공업지역도 허용



○ GB 해제 지역의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수요가 부족*한 경우 **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 허용**(GB 해제지침 개정, '14.6월)

* 임대주택용지 매각 공고일 이후 6개월내 매각이 어려운 경우 등

○ 해제지역에 산단 조성시 공원녹지 조성부담 완화를 위해 **공원녹지로 인정되는 범위를 하천, 저수지 등으로 확대**(GB 해제지침 개정, '14.6월)

* (현행) 도시공원 또는 녹지 → (개선) 하천, 저수지, 사면녹지 등도 포함

○ GB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**특수목적법인**(SPC) **설립시 민간출자비율을 한시적**('15년까지)**으로 확대**(1/2→2/3미만)하고, 민간 **대행개발도 허용**(GB 해제지침 개정, '14.6월)

○ 산단 인근 GB 지역에 대한 **추가조사**를 통해 지역별 **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을** 맞춤형으로 **해소**

□ **(기대효과)** GB해제 후 착공되지 않은 사업 등 17개 개발사업*이 활성화되어 **향후 4년간 최대 약 8.5조원**(총 사업비 기준) 투자 기대

* 세종, 광주, 창원, 부산 등 12개 지역 총 12.4㎢(여의도 면적의 4.3배 규모)

#### (2) 민간 공원개발 활성화

□ **(지역 건의내용) 민간에 의한 공원개발이 촉진**될 수 있도록 **민간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**를 요청

○ 지자체 재정여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**민간이 도시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**하였으나, 현재 **활용실적 전무**

* 약 2만개의 도시 공원(총면적 1,020km²)중 40%는 지자체가 조성중이나, 나머지 60%는 미조성 상태

- 민간 개발시 공원용지의 **최대 80%를 기부채납**하는 등 과도한 조건 부과에 개발 수요가 낮음(경남 등)

- **기부채납을 완료한 이후**에만 **수익사업을 시작**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의 **자기자본 조달부담** 증가(강원 등)

-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등 **도시공원 개발 절차가 복잡**(대구 등)

□ **(지원방안) 민간 공원개발 인센티브 확대 및 추진 절차 간소화**

○ **사업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** 투자자의 **기부채납 비율을 완화***하고 **공원 최소면적 기준도 완화****(도시공원법 개정, '14.12월)

* (현행) 주거지역·상업지역 시설: 80%, 녹지지역 시설: 70% → (개선) 모두 70%

** (현행) 10만㎡ 이상 → (개선) 5만㎡ 이상

○ 투자자의 자기자본 부담이 완화되도록 **공원 기부채납 완료 전**이라도 **수익사업 추진**을 허용(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지침 개정, '14.6월)

○ **사업제안 단계에서의 감정평가서 제출을 생략**하고, 기본설계도를 **기본구상도**(약식 설계도)**로 대체**(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지침 개정, '14.6월)

□ **(기대효과)** 미조성 상태로 있는 **608㎢**(여의도 면적의 210배 규모)**의 도시공원조성사업이 활성화**될 수 있는 기반 마련

* 사업 초기단계인 원주 등의 공원 조성사업(약 90만㎡)의 진행이 본격[illegible] 향후 4년간 약 8,500억원(총 사업비 기준) 투자 기대

## (3) 지역도시재생 촉진

□ **(지역 건의내용) 구도심 개발촉진**을 통해 인구감소, 산업침체 [illegible] 대응하고자 하나, **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워 제도개선 요청**

○ 지자체 재정여력 부족으로 구도심 개발이 부진하여 주민들이 **외곽의 신축아파트로 이동**하면서 구도심 공동화 심화(전주 등)

○ **구도심 상권 쇠퇴가 지속**되어 도심 구조 자체의 변경이 필요한 실정이나 참고할 만한 모델이 없어 애로(충주 등)

□ **(지원방안) 규제완화, 금융지원 등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 추진**

○ **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**하여 동 지구내에서는 지자체가 토지용도, 건폐율·용적율 등을 **기존 규제에 구애 받지 않고 도시재생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허용**(국토계획법 개정, '14.12월)

* (지자체) 지구지정을 위한 개발구상등 신청 → 중도위 심의 → (국토부) 지정



**<입지규제 최소지구>**

◇ 도심내 **쇠퇴한 주거지역, 역세권** 등을 **주거·상업·문화기능이 복합**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입('14년 법 개정안 국회제출, '15년 지구지정)

◇ 지구로 지정시 **기존의 획일적 입지규제에서 벗어나**, 건축물 층수제한, 용적률,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**완화 또는 배제**되어 자유로운 개발 가능

○ 싱가폴 마리나베이, 동경 도시재생특구와 같이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**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개발** 촉진

○ **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***를 선정(11개소, '14.4월, 국토부)하여 **상권활성화, 생활인프라 조성, 주거환경 정비** 등 재정 지원(지자체 매칭)

* 경제기반형(2개, 개소당 250억원): 노후 항만·역세권과 배후지역 정비
근린생활형(9개, 개소당 60~100억원): 쇠퇴상권 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

- 이후 지자체와 협업하여 **중장기 계획**(도시재생전략 계획)을 수립하고 **국가 지원사항을 확정**('15년)

○ 주택기금을 **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·개편**하여 **민간이 도시재생사업에 투자**하는 경우 **융자 지원**(주택도시기금법 제정, '14.12월)

□ **(기대효과)**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**쇠퇴한 구도심의 활력을 회복**하여 투자여건을 개선하고, **지역일자리 창출***

* 창원시, 청주시 등 이미 소규모로 도시재생을 시행한 사례 분석 결과, 건설업 대비 약 3배의 고용창출 효과(도시재생 1억원당 4.3명 vs. 건설업 1.4명)

## (4) 도심지 주차난 해소

□ **(지역 건의내용)** 전국 각지에서 주차난으로 인해 **전통시장 및 구도심 상권의 어려움이 가중**되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

○ **시장 주변 주차공간이 협소**하여 고객 유치에 애로(전통시장 상인 등)

○ 외국인 등이 많이 찾는 중심지에 **관광버스 등 주차 곤란**(전북 등)

○ **단속인력 부족, 불법 주정차 방치, 주민갈등** 빈발(다수 중소도시)

□ **(지원방안) 주차장 공급확대와 수요관리 강화를 병행**하여 전통시장, 도심지, 관광지 등의 **주차난을 완화**

① **공급 확대**

○ 주차 빌딩내 **입주가 가능한 시설에 주거용 시설도 포함***하여 **민간주차장업 활성화 지원**(주차장법 시행령 개정, '14년)

* (현행) 근린생활·상업·업무시설 등 → (개선) 주거시설까지 허용

○ **공공청사, 회사 주차장** 등을 주말·야간에는 외부에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모범사례 확산(국토부·안행부·지자체 협업)

* (예시) 광진구는 회사, 대형건물 등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중

○ 상가·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**무인주차장**(코인식 주차장)**을 설치·운영**하되, 교통흐름에 영향이 없도록 **보완조치 병행**(국토부·안행부·경찰청 협업)

○ **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**을 통해 **주차장 시설확보를 지속 지원**

* '02~'13년까지 592개 전통시장 주차장 건설에 5,475억원 지원

○ 주민공모를 통해 확보된 도심속 노후주택, 틈새 짜투리 땅 등을 활용하여 **소규모 주차장 조성**(국토부·안행부·지자체 협업)

② **수요관리 강화**

○ 필요한 사람이 **필요한 시간만큼만 주차장을 이용**하도록 유도

- 지역여건에 맞게 **공영주차장 요금을 합리화***(국토부 지침마련, '14.12월)하여 확보된 재원 등으로 전통시장, 관광지 등의 **공영주차장 확충**

* (합리화 대상 예시) 주차요금이 너무 높아 불법주차를 유발하는 경우, 요금이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하게 장시간 사용을 유발하는 경우 등

- **지역발전특별회계내 사업을 신설**하여 지자체의 주차장 건설비용을 **중앙정부에서도 지원**(국토부·안행부·지자체 협업)

○ **주차 단속원**(계약직 공무원 등)**을 확대**하고 **과태료 부과권을 광역 지자체까지 허용***(도로교통법령 개정, '14.12월)(국토부·안행부·경찰청 협업)

* (현행) 구청장·군수에 위임 → (개선)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구청장·군수



○ 인근 주차장의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**스마트앱 개발·보급**

⇒ **도심지 주차난 완화 세부대책** 마련(관계부처 협업, '14.6월)

□ **(기대효과)** 도심지 주차난 완화로 **지역상권이 활성화**되고 **지역내 일자리 창출**(시간제 주차감시원 등) 등도 기대

## (5) 기반시설 관련 지역간 이해관계 조정

□ **(지역 건의내용)** SOC 등 입지경쟁, 기피시설 거부 등 **지역간·지역내 갈등확산**이 우려될 경우 중앙부처 차원의 조정역할 필요

□ **(지원방안)** 지역간·지역내 갈등의 예방 및 조정 등을 위한 **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**(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업)

○ **(모니터링) 다양한 채널을 활용**하여 갈등예상 사례를 집중 점검

○ **(조정) 지자체간 행정·전문가 협의회 등을 활용**하여 조정 추진

- **중립적 기관에 위임**하거나 갈등 당사자 및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**공동 연구용역** 등을 통해 **문제해결 지원**

○ **(사례확산)** 모범적 문제해결 사례를 **전파·보급**하고 **매뉴얼화** 추진

**< 대구 취수장 사례 >**

◇ **(갈등내용)** 구미시는 지역발전을 위해 **구미산단 현대화·확충**을 희망하고 있으나 하류에 취수장이 있는 대구시는 **수질악화 우려**로 소극적 입장

- 대안으로 **대구의 취수장을 낙동강 상류로 이전**하는 방안이 있으나, **구미시는 유량 감소 등을 우려하여 반대**

◇ **(조정과정)** 지자체간 전문가 자문단으로 **사전검토 협의체를 운영**하고 **연구용역을 통해 우려사항 사전검증**('14.3~6)후 지역합의를 토대로 사업 추진('14~'22년)

◇ **(기대효과)** 취수장 이전이 이루어지면 하이테크 밸리 등 **구미산단 현대화·활성화**가 가능하고 대구 등 **낙동강 하류지역에 안전한 식수공급**도 가능('22년)

- 울산 취수장인 사연댐 수위 조절도 가능하여 **반구대 암각화 보존**도 기대

## 1-2 농산어촌지역 제기과제

◇ **新산업 수요**에 맞추어 **농지·산지규제를 유연화**

◇ **청년층의 귀농·귀촌 지원, 지역문화유산의 관광 산업화** 등을 통해 **농촌지역 경제 활성화** 지원

### (1) 농지·농업법인 규제 유연화

□ **(지역 건의내용)** 농지활용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**경직적인 농지규제*를 유연하게 개선요청**

* (소유) 농업인(법인)이 농사 목적으로만 소유 가능(예외: 국가, 지자체, 주말·체험영농등)
(이용) 위탁경영·임대의 원칙적 금지(예외: 고령, 징집, 국외체류, 질병 등)
(행위제한) 농업진흥구역내 농업생산,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없는 행위 금지

○ **첨단농업**을 위해서는 **시험·연구용 작물재배 등을 위한 농지**가 필요하나 **농지취득 자격이 지나치게 엄격**(바이오·벤처 기업 등)

○ 농업법인 규제 등으로 **기업형 농업 활성화** 저해

* 농업법인(영농조합·농업회사) 현황('12년): 12,981개, 총 매출액 17.1조원

□ **(지원방안)** 농지·농업법인 규제를 개선하여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**유연하게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**

#### ① 농지규제 유연화

○ 농지수요 변화 등을 감안하여 **시험지·연구지·실습지 목적 농지 소유 허용자격*을 확대**(농지법시행규칙 개정, '14.12월)

* (현행) 공공단체, 학교, 농업생산자단체, 농업연구기관(비영리), 종자 및 농업기자재 생산자,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 엄격히 제한
→ (개선) 바이오·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등도 농지보유 허용(대상 추가발굴)



○ 고부가가치 영농 유도를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을 통해 **건축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**와 **범위를 확대***(농지법시행령개정, '14.12월)

* (예)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 설치 허용
농산물 가공처리시설 건축: (현행)10,000$m^2$이하 → (개선)15,000$m^2$이하

○ 작물재배 **이외의 용도**로 **허가없이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**

* (예시)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설치 : (현행) 5년 → (개선) 7년,
기타 시설 설치 : (현행) 3년 → (개선) 5년

○ **농지 전용후 5년이내 용도변경**을 할 경우 **승인대상 지역***을 축소(농지법시행령 개정, '14.12월)

* (현행) 전체 용도지역 대상
→ (개선) 도시지역·계획관리지역·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용도지역 대상

○ **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대상 확대*** 및 **횟수·기간 연장****

* (현행) 산단 시설용지, 도시개발사업 부지, 관광지 및 관광단지, 중소기업 공장용지
→ (개선) 농지보전부담금이 일정금액(예: 2천만원) 이상인 경우

** (현행) 3년간 3회(중소기업: '14년말까지 4년간 4회) → (개선) 4년간 4회

#### ② 농업법인 활성화

○ **농업법인의 사업범위**를 확대*(농어업경영체법 개정 '14.12월)

* (현행) 작물재배, 가공, 유통 사업→ (개선) 농촌관광, 휴양사업까지 확대

○ 영농조합법인이 **주식회사·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**으로 **조직을 변경***할 수 있도록 **법적근거를 마련****하고 **농업법인간 합병·분할을 허용**(농어업경영체법 개정 '14.10월)

* 농업법인 구성원 책임범위를 **무한연대책임에서 출자액 한도 유한책임으로 전환**

** 영농조합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형태
(현행) 합명·합자회사만 가능 → (개선) 주식·유한회사도 허용

□ **(기대효과) 대규모 기업농 육성** 및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**투자활성화**

## (2) 산지규제 완화

□ **(지역 건의내용)** 휴양, 힐링, 신재생에너지 입지 수요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**산지관련 규제 개선 필요**

○ **농산어촌 인구 대폭 감소**(60년대 70% → '13년 6%) 등을 감안한 중장기 관점의 제도 개선도 필요

□ **(지원방안)** 산지관리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**산지 전용허가 기준 등 규제를 완화**

① **(산지활용 촉진)** 휴양시설 등 새로운 **입지 수요를 지원**하고 **산지전용 허가기준**을 **탄력적으로 완화**

○ **「산림복지*단지지구」 제도를 신설**하여 산지에 **장기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이 원활히 조성**될 수 있도록 지원('14.12월)

*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·휴양 및 보건 등의 서비스를 창출·제공하는 등의 활동

** (현행) 국가·지자체 중심으로 단기체류형 산림휴양시설만 조성·운영 → (개선) 민간참여를 확대하고, 장기간 체류가능 시설 조성·운영도 허용

○ **보전산지내**에서 병원 이외에 **의료부대시설 설치도 허용**(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, '14.12월)

* (현행)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요양병원 등의 병원시설만 설치 가능 → (개선) 주차장, 장례식장, 병원관리시설 등 의료 부대시설도 설치 가능

○ **풍력발전시설 단지** 조성시 **편입가능한 산지 면적을 확대**(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, '14.12월)

* (현행) 3만$m^2$까지 편입 가능 → (개선) 10만$m^2$까지 편입 가능

○ **3만$m^2$이상의 산지**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**조례를 통해 전용허가**를 할 수 있도록 **허용**(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, '14.12월)

* (현행) 조례로 허가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산지면적은 3만$m^2$ 미만 → (개선) 3만$m^2$ 이상 산지면적으로 확대



○ 보전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낮은 산지에 대해서는 30만$m^2$이상의 **관광·산업단지** 조성시 **보전산지 편입제한 규정 적용을 제외**(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, '14.12월)

* 30만$m^2$이상 면적 개발시에는 지자체 보전산지 비율 이상의 보전산지 편입 불가
: (예) 현재 A군 전체 산지중 보전산지 비율 60%인 경우, 사업자가 30만$m^2$ 이상의 관광단지 조성시 보전산지를 60%이상 편입 불가

* 30만$m^2$ 이하 면적 개발시에는 보전산지 편입제한 규제가 없음

② **(개발부담 완화)** 산지전용 허가시 부과되는 **의무사항** 및 **절차·비용 등의 부담 완화**

○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지 개발시 **토사붕괴 방지시설**(小段) **설치 의무 완화***(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, '14.12월)

* (현행) 비탈면 높이가 5m이상인 경우 5m미만의 간격으로 1m이상의 소단 설치 → (개선)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서 설치시 소단설치 규정 폐지

○ 현재 법령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**전용허가 타당성심사 최장 기간**을 법령에 **명시**하여 **심사기간을 단축**(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, '14.12월)

* (현행) 관련 규정 미비(전용허가 타당성심사에 통상 6개월 이상 소요) → (개선) 규정 신설(심사의뢰 후 90일 이내 완료)

○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**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대상을 확대***하고 **분할납부 횟수·기간 연장****(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, '14.12월)

* (현행) 도로, 철도, 공원시설 등 국가·지자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 시설 → (개선) 목재체험장, 산림전시관 등 국가·지자체의 산림공익시설 포함

** (현행) 3년간 3회 이내로 납부 → (개선) 4년간 4회 이내로 납부

○ **공장설립 최소 면적** 기준(1만$m^2$)에 **원형보전지를 포함**토록 하여 산지에 **소규모 공장**을 설립하려는 경우 **원형보전지를 대체할 부지의 추가 매입 부담 완화**(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, '14.12월)

* (사례) 공장 설립을 위해 7,000$m^2$ 산지가 필요한 A社:
(현행) 공장설립을 위한 최소 전용 면적인 1만$m^2$와 함께 원형보전지(통상 전용면적의 15~20%) 추가 구입 → (개선) 공장설립 최소 면적인 1만$m^2$만 구입

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③ **(산지 재분류)** 10년 단위의 **산지구분타당성 조사를 도입**하기 위한 **법적 근거 마련**(산지관리법 개정, '14.12월) 후, 이에 따라 **타당성 조사 착수**('15년~)

* 산지구분타당성 조사 시행에 필요한 기준마련 등을 위해 연구용역 수행('14~'15)

○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**산지 구분*** **개편 방안을 마련**

* 현행 산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산지(산지의 77%)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산지로 구분

□ **(기대효과)** 보존 필요성이 낮은 **산지**를 **활용**하여 **휴양·힐링·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이 활성화**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

### [3] 귀농·귀촌 활성화

□ **(지역 건의내용) 귀농·귀촌 수요증가**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**여건은 미흡하여 추가 지원대책 마련**을 건의

○ 2030세대도 귀농을 원하지만, **정보·교육, 소득창출** 등 어로(조사 품부, '14.1월 실태조사 결과)

○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을 꿈꾸지만, 성공적인 정착에 대한 **자신감이 부족하고 초기 비용도 부담**(귀농·귀촌 간담회, '14.1월)

* 농가인구 : ('10) 306만명 → ('11) 296만명 → ('12) 291만명
* 귀농·귀촌가구 : ('10) 4,067가구 → ('11) 10,503가구 → ('12) 27,008가구

□ **(지원방안)** 귀농·귀촌 관련 **교육·정보제공·자금지원** 등 강화

① **2030세대 귀농인 맞춤형으로 단계별 특화 프로그램** 개발·지원

○ **(귀농 관심·준비단계)**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**정보를 제공**

- 도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**귀농·귀촌 종합센터를 이전**(수원→서울)하고, **귀농전문 상담사**를 통해 귀농 준비를 맞춤형으로 지원



- **농업 마이스터 대학*** **2개를 선정**하여 농업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**현장 밀착형 교육과정 개설·운영**

*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(여주), 한국농수산대(화성), 연암대학(천안), 한경대(경기 안성), 충남대(대전), 공주대(공주)

○ **(귀농 실행단계) 농촌 정착 및 초기 영농사업** 지원

- 선배귀농인, 마이스터(102명), 신지식농업인(357명)을 **1:1 귀농멘토**로 지정하여 청년층 현장 기술습득 체화, 농촌 적응을 지원

- 안정적 영농종사를 위해 **빈집수리비 및 농지임대·비닐 하우스 설치사업 등을 우선 지원**

② **일반 귀농·귀촌 지원 프로그램 확대**('14.12월)

○ **귀농 실습에서 창업까지 모든 준비를 원스톱으로 지원**하는 **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***를 주요 귀농 거점별로 **건립**(예산: 개소당 8억원)

- 현재 4개 지역(제천·영주·홍천·구례)에 센터 건립 추진중

* 텃밭(세대별 300㎡), 공동 실습농장·시설하우스·자재보관소를 구비, 개소당 30세대 수용

○ 빈집 개조 등을 통해 귀농 준비기간 중에 있는 **예비농업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'귀농인의 집' 300개소 건립**

* 현재 100여개소 운영중(입주기간: 6개월 이하, 월 임대료 10~15만원)

- 현재 운영중인 '귀농인의 집'의 **활용성과를 조사·평가**(4월)하여 **우수지역에 대해서는 중앙·지역정부가 1:1 매칭으로 지원**

○ 예비 농업인력에게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**농산업 인턴 신청자격을 확대**(44세→50세이하)

* 월 최대 80만원의 한도내에서 약정임금의 50%까지 지원
** 농산업 인턴 현황 : ('11) 300명 → ('12) 230 → ('13) 250

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○ 농어촌 주택 **매매·임대 중개지원**을 위해 귀농·귀촌 종합안내 홈페이지(www.returnfarm.com)를 통하여 **빈집·빈방정보 안내 서비스 확대**

○ 귀농인 주택구입 지원사업 **융자금리 인하** 및 **지원금액 확대**

- **융자금리**: (현행) 연리3.0% → **(개선)연리 2.7%**
- **주택구입자금 지원한도**: (현행) 4천만원 → **(개선) 5천만원**

* 지원대상 : 100시간 이상 농업교육 이수자, 3개월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

○ **북한 이탈주민** 중 **농촌지역 정착 희망자**를 선발하여 **임대주택 제공·농지은행 농지임대·귀농교육** 등을 패키지로 제공

* 탈북전 농업연구기관 종사자·농업전문학교 교육 이수자 등 우선 추천

- 북한 이탈주민 **정착지원 교육과정**(하나원)에 **귀농 프로그램 소개과정을 마련**하여 **적극적인 참여**를 유도

○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개발·운영 중인 **귀농·귀촌 지원 프로그램* 중 우수사업을 평가·선발**하여 지원

* (예시) 고창군 귀농인 유치 우수마을 지원사업, 상주시 소규모귀농마을 기반조성 사업

③ **농어촌 정주여건 개선**('14.12월)

○ **농어촌 벽오지**를 중심으로 일정수 이상이 요청하면 **소형버스를 운행**하는 **'콜버스(수요응답형 버스)' 도입** 등 **농촌형 대체교통수단 지원사업 추진**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, '14.12월)

○ **농업인 안전보험*** 보장확대(9천만→1억원), **농작업 근로자 보장보험**** 대상지역 확대(44개 시군구→전국) 등 **농업인 전문보험 확대**

* 영농·영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(15~84세)이 가입
** 농작업근로자(수익자, 20~84세)를 고용하는 농장주가 가입

□ **(기대효과) 귀농·귀촌 활성화를 통해 농업 투자 활성화**

* 200평 비닐하우스 설치비 3천만원 등 가구당 초기 투자비용은 약 4천만원



## (4)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광상품화

□ **(지역 건의내용)** 전통사찰, 향교·서원 등 **지역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가 부실화**되고 있어 이에 대한 **대책 마련 필요**

○ 출가자 감소, 인구고령화 등으로 **관리가 소홀한 지역문화유산이 증가**하고 있는 실정

□ **(지원방안)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전수조사**를 실시하고 **지역맞춤형 관광 상품화 추진**(문체부, 문화재청)

○ 전통사찰, 향교·서원 등 **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**(문체부·문화재청, '14년~)

- 특히, 개인 소유시설 중 **관리인이 없거나 유지비용 과다 등으로 방치**된 경우도 **조사대상에 포함**

○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**체계적인 보존·활용방안 마련**(문체부, '15.12월)

- 보존가치가 크고 관광상품으로 개발가능한 지역문화유산을 선정하여 **개보수, 문화재 등록 등 추진**

○ **지역문화유산을 관광 상품화**하기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

- **'(가칭)가볼만한 지역문화유산'**에 대한 팜플렛·앱 작성, 홈페이지 게재 등 정보전달 강화(관광공사, 지자체)
- 기존 템플스테이 위주에서 벗어나 **체류·체험 프로그램* 다양화**

* 암자순례, 향교·서원스테이, 향교·서원을 활용한 학습프로그램 등

- 중고등학생들의 지역문화 관심 제고를 위해 **지역문화유산 보존·관리활동**을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
- **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***에 전통사찰, 향교·서원 등 **포함**

* 국내여행 경비를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분담하여 적립하는 사업으로, 근로자는 적립금이 담긴 카드로 숙박시설, 레저시설 등 국내여행·여가활동에 사용 가능

□ **(기대효과)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체계화**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**관광자원으로 활용**

## 2 인센티브 강화

◇ **지역행복생활권과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** 추진을 위한 효율적 재정지원 추진

○ 집행과정에서도 **포괄보조방식 예산 확대**로 재정 자율성 제고

◇ 지역의 불리한 투자유치 여건을 보강하기 위해 **재정·세제·금융·입지 등을 중심**으로 인센티브 확대

### (1) 재정 지원

□ **지역행복생활권 지원**

○ 행복생활권 지원을 위해 **총 2,146건의 사업** 발굴(생활권별 평균 38건)

○ '14.6월까지 **지역위 중심으로 타당성을 평가**하고, **유사·중복 조정, 기존사업 활용가능성**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**지역발전 5개년계획**('14.7월)에 반영

- **기존 부처별 사업 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기존 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지원**('14년 예산기준 국비 8.1조원(128개 사업) 연계활용 가능)

- **'15년 예산부터 관련 소요를 반영**하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**국가재정운용계획**('14~'18년)에도 반영하여 지원

□ **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지원**

○ 특화발전 프로젝트 검토·선정과정에서 **지원소요를 정밀 산정**

- 시·도별로 설치되는 **창조경제혁신센터**와의 연계방안 등 검토

○ **중앙과 지역이 역할을 분담**하여 지원하되, 국고지원 소요는 **국가재정운용계획**('14~'18년)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지원

- **계속사업**인 경우 **조기완공 추진**

- **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은**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**타당성이 확보**된 이후 **추가 지원대상으로 선정**하여 지원



□ **지역발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 개선**

① 지자체의 **자율재원**을 **지속 확충**('14년~'17년 기간중 **총 7.3조원 확충,** '14년 0.7조원 → '15년~'17년 6.6조원)

○ 지방재정 확충방안('13.9월) 등에 따라 **지역 자율재원**을 확대 ('14년~'17년 기간중 **총 4.5조원 확대,** '14년 0.3조원→'15년~17년 4.2조원)

○ 국가시책사업 등에 충당해 온 **특별교부세·금** 중 일부를 **지자체 자율재원**(보통교부세)으로 이전('14년~'17년 기간중 **총 2.8조원 이전,** '14년 0.4조원→ '15년~'17년 2.4조원)

* 지방교부세(0.4조): '14년부터 시행, 교육교부금(0.4조): 법개정을 거쳐 '15년부터 시행

② 지역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**포괄보조방식 예산확대** ('14년 3.5조원 → '15년 4.5조원 내외)

○ **지역발전특별회계**를 SOC에서 **생활밀착형 사업위주로 전환** 하면서 지자체의 **사업 선택권을 확대**

③ 지자체 **자율편성사업**이 지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추진되도록 부처의 **사업지침 대폭 간소화*** (14년 상반기)

* (예) 기본계획 승인권한 완화(시·도→시·군) 등 현장 자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지침 통합·간소화

④ 지자체별 지역사업 추진실적을 평가(지역발전위)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**우수 지자체**에 추가 지급하는 **인센티브 재원을 단계적 확대** ('14년 700억원)

○ 특히, **둘 이상의 지자체**가 공동 추진하는 **님비사업**은 **국고 보조율 상향 지원*** 등 인센티브 강화

* 화장장(70 → 80%), 쓰레기매립장·소각장(30 → 50%) 등

## (2)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

□ **(지역 건의내용)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**을 위해서는 지역의 **기업 유치가 필수적**이나,

○ 현재 기업의 **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세제감면*** **요건 등이 엄격****하여 완화 필요

*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시 7년간 100% + 3년간 50% 법인세 감면
단, 지역 광역시 등으로 이전시 5년간 100% + 2년간 50% 법인세 감면

** (예시) 이전 당해년도에 본사인력의 50%이상 이전 필요

□ **(지원방안)** 기업이 지방이전시 **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**하고 지역투자에 대한 **세제지원 혜택도 확대**

○ 기업 본사 또는 사업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**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연장**(조특법 개정, '14.12월)

- 법인세 감면 요건 중 **본사 인력 기준에 3년 유예 기간** 신설

* (현행) 법인본사 이전년도에 본사인력의 50% 이상 이전
→ (개선) 법인본사 이전 후 3년 이내에 본사인력의 50% 이상 이전

※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인원이 많아 단계적으로 이전하여 50% 요건 미충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

- 본사 또는 사업장 지방 이전시 **법인세 감면 기산점을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 기준으로 변경**

* (현행) 이전일 기준 → (개선) 최초 소득 발생일 기준

- 본사 또는 사업장 이전에 대한 **법인세 감면** 및 **대지·건물 양도차익 과세 특례**(5년간 과세이연 후 5년간 분할납부, '14년 종료예정) **적용기한을 연장***(조특법 개정, '14.12월)

* (현행) '14년말(본사·공장 신축: '17년말) → (개선) '17년말(신축: '20년말)



○ 혁신도시 **이전 공공기관, U턴 기업**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**기산일을 이전일에서 최초소득발생일 기준으로 변경**(조특법 개정, '14.12월)

○ **기업이 지방**(수도권 밖)에 **투자**하는 경우 **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1%p 인상**(조특법 개정, '14.12월)

< 고용창출투자세액 변경 >

| 구 분 | 대기업 | | 중견기업 | | 중소기업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수도권 안 | 수도권 밖 | 수도권 안 | 수도권 밖 | 수도권 안 | 수도권 밖 |
| 기본공제 | 1% | 2% | 2% | 3% | 4% | 4% |
| 추가공제 (고용증가 비례) | 3% | 3% → 4% | 3% | 3% → 4% | 3% | 3% → 4% |
| 합 계 | 4% | 5% → 6% | 5% | 6% → 7% | 7% | 7% → 8% |

□ **(기대효과)** 조세감면 혜택 확대로 기업의 **지방이전·투자 촉진 및 이전기업의 조기정착**에 기여

* '12년도 본사 이전으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 수는 327개(감면액: 2,458억원)

## (3)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 확대

□ **(지역 건의내용)** 지역별로 **특화된 산업단지 공급이 부족**하고, **도시인근 첨단산업용지도** 부족*하여 **입지여건 개선 필요**

* 도시인근의 첨단산업입지 제공을 위한 도시첨단산단은 전체 산단면적의 0.2%에 불과하고,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단지 공급도 부족

□ **(지원방안) 다양한 형태의 산업용지**를 **중장기 발전비전, 지역의 산업기반 등**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('14년 14개*, '15~17년 25개 선정)

* **도시첨단산단**(인천, 대구, 광주), **노후산단**(구미, 안산, 춘천, 진주, 영암, 창원), **특화산단**(원주, 진주·사천, 거제, 전주, 밀양)

○ **(도시첨단산업단지*) '14~'15년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9개소 이상 추가 지정**

* 우수한 인력과 생활여건을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프라를 갖춘 도시 인근에 조성하는 산업단지

- **'14년 3개소**는 **인천, 대구, 광주**에 조성을 추진하여 선도모델을 창출

  * 3개소 개발 완료시 총 약 2.1조원의 투자 효과 기대

- **'15년에 지정하는 6개소**는 **지자체 공모**('14.6월)를 통해 지정

○ **(노후 산업단지)** '17년까지 **25개의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**하여 **기반·문화·보육시설 등을 확충**

- **관계부처 합동 TF**를 구성하여 **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**을 수립('14.6월)하고, 산단별 상황에 따른 리모델링 방식 결정

- **'14년**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**6개소**를 **리모델링 대상**으로 선정*

  * 리모델링 대상 선정시 산단내 기반시설(도로 등) 보수, R&D시설 유치, 편의·문화시설 보강 등에 국비지원

  ▪ 공동사업(재생+구조고도화) : 구미1국가산단, 안산 반월국가산단
  ▪ 산단 재생사업(국토부) : 춘천 후평일반산단, 진주 상평일반산단
  ▪ 구조고도화사업(산업부) : 대불국가산단, 창원국가산단

○ **(특화산단* 조성)** **의료기기**(원주), **항공**(진주·사천), **해양플랜트** 거제), **탄소**(전주), **나노**(밀양) 산업 등에 대해 **입지**를 **지원**

  * 지역수요·산업특화도에 따른 "맞춤형 산업단지"

- 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을 거쳐 **수요**와 **입지 타당성**이 높은 지역은 **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개발('14년 선정)***

  * 산단 지정시 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분양할 수 있고, 진입도로 국비지원(100%),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(취득세: 면제, 재산세: 5년간 면제) 혜택 등 강화

- 나머지 지역은 기업수요 범위내에서 **지자체가 추진하는 일반산단**으로 조성하되, **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***

  * R&D자금지원, 거점시설 입지 우선 공급, 산단개발 인허가 절차 지원 등

※ 지역별 지원방식(산단 유형, 규모, 입지, 개발시기 등)은 LH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결정

□ **(기대효과)** 지역의 특·장점에 부합하는 **산업입지를 확충**하고, **산단내 근로자의 정주여건**을 개선하여 **지역 기업유치 활성화**



## (4) 투자선도지구 신설

□ **(지역 건의내용)** 유사·중복되고 성과가 미흡한 **지역개발제도를 단순화·효율화**하고, **인센티브 제공도 전략사업에 집중할 필요**

□ **(지원방안)** 현행 **2개 법률**에 의한 **5개 지역개발제도***를 **통합**하여 **투자선도지구를 신설**(지역개발지원법 제정, '14.12월)

  * 개발촉진지구, 특정지역, 광역개발권역, 지역개발종합지구, 신발전지역 등(지역균형개발법, 신발전지역법에 근거)

○ **주요 인센티브 내용**

- **(규제특례) 건폐율·용적률 완화,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*** 및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**73종 규제특례**** 적용

  * 건축법상 건축허가, 국토계획법상 도시·군 관리계획 결정 등

  ** 입주기업 종사자등을 위한 주택 우선공급, 학교설립시 교육과정 운영 특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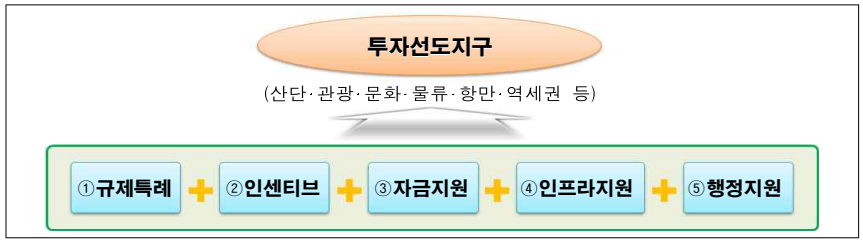
- **(인센티브)**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**세제감면**과 개발부담금,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**7종 부담금 감면**

- **(자금지원)** 입주기업 용지매입비 융자, 토지 등 임대료 감면 등 **개발사업 관련 자금 지원**

- **(인프라지원)**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한 기반시설 지원, 혼잡도로 및 광역도로 등 도시내 SOC 지원(중추도시권 발전계획 연계)

- **(행정지원)**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지원, 사업계획 승인 지원, 기타 투자유치 지원 등 **각종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**

< 투자선도지구 지정효과 >



○ **(적용대상)** 지역개발사업* 중 **발전 잠재력**이 있고 **경제적 파급효과**가 큰 지역 **전략사업**

* 산업단지, 물류·유통단지, 관광단지, 관광휴양시설, 항만·역세권 등

○ **(유형) 중추도시생활권** 등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**거점전략화, 도농연계·농어촌**생활권 등에 적용되는 **지역활성화** 유형으로 구분

< 투자선도지구 유형 >

| 유형 | 거점전략화 투자선도지구(거점형) | 지역활성화 투자선도지구(낙후형) |
|---|---|---|
| 적용지역 | 중추도시생활권 | 도농연계·농어촌생활권 |
| 지정요건 | 1,000억 투자, 300인 고용 | 500억 투자, 150인 고용 |
| 지정규모 | 10만㎡이상 | 3만㎡이상 |

○ **(지정계획)** 지역행복생활권 단위로 **핵심프로젝트 사업**에 적용

- **'15년**에 기존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**3개소를 시범 지정**(중추·도농·농어촌생활권 각 1개소)

- **'17년까지 총 14개 지정** 추진(시·도별 1개씩 지정)

□ **(기대효과)**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택·집중 개발하여 **민간투자·고용 확대*** 및 **경제적 파급효과 창출**

* '17년까지 14개소 지정시 약 2.4조원 투자 효과기대

**【사례】 ○○복합휴양지 조성사업**

○ **(현황)** '08년도에 휴양관광지 개발*을 위해 특정지역(지역균형개발법)으로 지정되었으나,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투자 부진

* 개발계획 : 총사업비 1700억(민자 1500억, 지방비 200억) / 25만평
북유럽풍 테마파크, 호텔 등 숙박업, 음식업, 특상품 매장 등
특정지역 지정으로 24개 인허가 의제 지원

○ **(투자선도지구 지원)** 개발부담금(7건), 법인세 등 감면, 기반시설사업비 지원 등 종합지원 통해 사업성 제고 → 민간투자 유인



## (5) 정책자금을 활용한 금융인센티브 제공

□ **(지역 건의내용)** 다양한 정책자금이 있으나 **지역기업은 자금조달 여건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금융접근성, 금리** 등 **보완 필요***

* 설비투자펀드(5조원)도 소진(4.2조원)되어가는 상황이며 수도권(2.7조원, 약 65%) 대비 비수도권(1.5조원, 약 35%) 지원비중이 저조

□ **(지원방안) 지역특화산업 등을 중심**으로 **설비자금, 운영자금, 창업자금** 등의 **지원**방안을 마련

○ **(지역설비투자 펀드 신설)** 산은·기은의 중소기업 **여신상품을 활용**하여 **1조원규모의 '지역설비투자펀드' 조성**('14.9월)

- 추후 **집행상황**을 보아가며 **펀드규모 추가 확대 검토**

* 지역소재 기업이 설비투자시 일반대출금리 대비 1%p 금리 우대

**<지역설비투자펀드 구성·운영(안)>**

- **(손실보전)** 우대금리 적용에 따른 손실률 증가를 감안, 금융기관 건전성 보강을 위해 정부에서 300억원 추가 출자
- **(지원대상)** 행복생활권 및 특화발전 프로젝트 관련 기업 등에 우선 지원

○ **(마케팅 자금 등 지원)** 고용창출 효과가 큰 **'가젤형 기업***(gazelle firm)' **육성 자금**('17년까지 1.2조원) **등을 지역기업에 우선 지원**

* 종사자수가 300인 미만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 20% 이상인 중소기업

- **마케팅 비용 지원**(기업당 연간 1억원)과 **융자지원**(운영자금 등, 기업당 연간 6억원) **병행**

○ **(모태펀드 지역계정 신설) 모태펀드**에 **지역계정을 신설**하여 **지역전용**으로 **유망서비스산업** 중심의 **창업지원펀드로 운용**('14.12월)

* 지원대상: 보건·의료, 관광, 소프트웨어, 컨텐츠, 물류산업 등 중심

- **총 1,000억원 규모(정부 500억, 민간 500억)***로 조성하고, 민간재원 유입을 위해 투자자에 **우선손실충당 등 인센티브 제공**

* ('14년) 모태펀드 자체자금으로 100억원 조성·개시, ('15, '16년) 재정 200억원씩 투입

□ **(기대효과)** 저리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특화산업을 포함한 **지역기업의 자금조달** 여건을 개선

### (6) 인력 · 판로 · 기술개발 지원 확대

□ **(지역 건의내용)**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**인력, 판로, 기술개발** 등도 지원 필요

□ **(지원방안)** 지역기업에 대해 **인력·판로·기술개발 등 지원 우대**

○ **(인력지원)** 청년인력 중심으로 **지역기업 지원 확대**

-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**지역기업에 가점 강화***(부처별 운영규정 개정, '14.5월)

* (예시) 군 소재(15점), 시 소재(10점), 광역시 소재(5점), 수도권 소재(2점)

- 고용보험의 **고용창출지원사업* 대상에 시도별 특화업종 포함**(광역지자체별 2개**, 시행지침 개정 7월)

* 유망창업기업, 국내복귀(유턴) 기업이 근로자 신규 채용시 인건비 일부(연 720만원(서비스업)~1,080만원(제조업)) 지원

** 시·도별 신청을 받아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업종을 선정

○ **(판로확대)** 기존 홈쇼핑 채널 재승인(5년주기)시 지역 중소기업 제품(지역 농산물 포함) **편성비율 확대***(홈쇼핑 재승인 기본계획 수립, '14.12월)

* 현재 평균 7% 수준을 단계적으로 15%(예시)까지 확대하는 편성비율 목표치 설정

○ **(연구소·기업 활성화)** 지역 연구개발특구내 설립된 **연구소기업의 정착**을 위해 제도를 개선('14.9월)

- 연구개발자 **휴직기간을 확대**(현행 3년→6년)하고, **등록취소 기준 완화**(기간연장: 3년→5년, 기준 지분율: 20%→15%)

○ **(중소기업 R&D 지원)** 지역별 **'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'(12개)를 활용,** 중기-연구기관 공동 R&D사업 추진*, 기술성과 이전 및 사업화 지원

* '14년 시범사업 운영(8억원, 20여개 과제) 후 15년부터 본격추진(미래부)

□ **(기대효과)** 지역 기업 및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**종합적 지원**을 통해 **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**



## 3 지역거점 개발 촉진

◇ **혁신도시, 기업도시** 등 기존 **발전거점을 중심**으로 **개발을 촉진**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조성

### (1) 혁신도시 활성화

□ **(지역 건의내용)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 없는 추진** 및 혁신도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**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필요**

* 혁신도시(10개) : 부산, 울산, 대구, 충북(진천·음성), 경북(김천), 경남(진주), 전북(전주), 광주·전남(광주·나주), 제주(서귀포), 강원(원주)

○ **(공공기관 이전)** 총 151개 기관 중 **금년내 75개 기관이 이전**하고 **'16년까지 이전을 완료**할 예정이나,

* ('13년) 35개 → ('14년) 75개 → ('15년) 30개 → ('16년) 11개

- '16년에 청사신축을 통해 이전 예정인 일부 기관*(5개)은 용도제한,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수도권 소재 **부지 매각이 지연**되고 있어 **이전계획에 차질 우려**

* 국토연, 식품연, 에너지관리공단, 한국교육개발원, 교육과정평가원

○ **(혁신도시 활성화)**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기업·대학·연구소를 집적하는 **산학연클러스터를 조성중**이나 관련 **규제, 투자여건 부족**으로 기업 입주 실적은 미미(분양율 14%)

□ **(지원방안)** 혁신도시가 **지역성장의 거점**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**공공기관 지역이전을 촉진**하고 **투자 여건**을 개선

○ **(공공기관 이전) 이전에 차질이 예상되는 기관**(5개)에 용도 규제 완화, 이전 지원 등 **기관별 맞춤형 방안 추진**

- 용도변경 필요기관*(1개)은 국토부,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**종전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**하여 **민간 매각 추진**(국토부, ~'15.12월)

* (식품연)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

- 이미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는 기관*(2~3개)은 **차입을 통해 이전예정지에 청사를 신축**하되, **차입이자는 재정 등으로 지원**(기재부)

* (국토연구원) 연구시설 → 업무·숙박·의료시설 허용('13.11)
(에너지관리공단) 업무시설 → 업무·의료·체육·문화시설 허용('12.10)
(식품연) 도시관리계획 변경후에도 매각이 곤란한 경우

-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어려운 기관(2개)*에는 **수도권에 잔류**하는 **임차기관들이 공동으로 매입**하는 방식으로 기존 청사를 매각하여 **청사신축비를 마련**(국조실, 교육부)

* (한국교육개발원, 교육과정평가원)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곤란

○ **(클러스터 활성화)** LH와 협의하여 **분양가를 인하**하고 **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***을 통해 **비용절감 지원**('14.12월)

* 취득세 100%, 재산세 5년간 100% 감면

- **소규모**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학연 클러스터내 **소(小)필지화를 허용***하고 **특성화고, 진흥원 등 산업 관련 진흥시설 등도 입주를 허용**(시설입지 기준 개정, '14.12월)

* 기존에는 대단위 필지로 분양하여 부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기업 입주에 한계



- 이전기관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공급 **수의계약 대상에 이전 공공기관 부설기관을 추가**(국토부 지침 개정, '14.6월)

* (현행) 국가·지자체 → (개선) 이전 공공기관 부설기관 추가

- **관계부처합동 TF를 구성**하여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, 혁신도시별로 **「산학연유치지원센터」*** **설립 활성화**

* 각 혁신도시별로 설치할 수 있는 투자유치전담조직(혁특법, '13.9월)

-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법제화, 지자체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실적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 **지자체 책임성도 강화**(혁특법 개정, '14.12월)

○ **(지역인재 채용 확대)** 기관별 실정에 맞는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 우대정책*을 도입하고 **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**하는 방안을 마련('14.12월)

* 채용할당제, 목표제, 가점 강화, 면접시 우대 등

- 지역대학 관련 학과와 이전기관간 **MOU 체결을 유도,** 이전기관-고용센터(고용부)-취업센터(지자체)간 **구인·구직 매칭 지원**, 혁신도시별 **합동채용 설명회 개최 추진**(~'15.12월)

* '12~'13년에 걸쳐 총 12회 개최(90개 이전공공기관, 20,950명 참여)

□ **(기대효과)** 115개 공공기관과 3.7만명이 **이전**을 완료하면 **지역경제의 발전거점으로 자리매김 기대**

* 기반시설, 주택, 학교, 클러스터 조성에 '20년까지 총 37조원 투입

○ 산학연클러스터 입주완료시(2,772천㎡) **약 4천개 기업 입주 등 기대**

## (2) 기업도시 개발 촉진

□ **(지역 건의내용) 기업도시에 기업 입주를 촉진**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('14년 종료예정) 연장 등 지원 대책 마련 건의

* 충주(충북-완공), 원주(강원-개발), 태안(충남-개발), 영암·해남(전남-개발)
** 입주기업에 법인세 3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

○ 대규모 개발위주로서 **소규모형 기업도시 개발이 불가**하고 **개발에 장기간이 소요**

* 최소개발면적: 산업교역형 500만㎡, 지식기반형 330만㎡, 관광레저형 660만㎡

○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공유수면을 **매립하여 개발**함에 따라 **매립관련 규제가 추가로 적용***되어 **개발이 지연**되고 **투자유치 곤란**

* 공유수면 상태에서는 담보대출, 외투유치가 불가능하여 자금 확보 애로

□ **(지원방안)**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**조세감면 혜택을 연장**하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**제도 개선**

○ 기업도시 **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**('14년 종료예정) **적용기한을 연장**(조특법 개정, '14.12월)

○ 소규모 기업도시 개발 촉진하기 위해 **연구용역**('14년)**을 통해 개발구역 면적 제한 요건을 완화**(기업도시법 개정, 15.12월)

* (현행) 330만㎡ 이상만 개발 허용 → (개선) 330만㎡ 미만도 허용

○ 외국인투자 유치용 부지 등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는 **부분준공**(매립준공) **방식을 활용**하여 **우선적으로 토지로 전환**하여 **소유권 인정**

※ 새만금 사업지역내 '한중경협단지' 등 일부 선도사업지역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

□ **(기대효과)** '15년말 준공될 **원주 기업도시 입주기업**(MOU 체결23개) **세제 혜택 확대** 및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**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**



## (3) 세종시 자족 기능 강화

□ **(지역 건의내용) 청사 이전이 대부분 완료**됨에 따라 지속적 성장을 위해 **자족기능 확충 및 민간투자 확대** 방안 건의

* 1단계 준공('12.4월), 2단계 준공('13.11월), 3단계 준공('14.12월 예정)
** 1단계 14개 기관, 2단계 16개 기관, 3단계 6개 기관 이전

○ 행복도시특별법령 개정('13.8월) 등 **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**된 만큼 **본격적인 기업 유치, 인프라 확충** 필요

□ **(지원방안)** 기업유치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**투자를 촉진**하고 **주민 생활여건 개선**

○ **(기업 등 유치)** 벤처기업, 협회와 같은 정부유관기관 등 앵커시설 유치를 위해 **맞춤형 토지공급** 추진(개발계획 변경, 14.12월)

- 입주수요를 고려한 위치, 면적 등 맞춤형 토지공급, 시너지 효과제고를 위한 집적화 추진, 주요 인프라 설치 등 지원

- **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추진, SB(Science Business)-Plaza* 유치, 지식산업센터**** 설립 지원을 통해 첨단기업 유치 촉진(14.12월)

* 연구개발, 인력양성, 창업지원 등을 위해 연구하우스, 산업단지 캠퍼스, Biz connect 센터(지원기능 연결) 등이 집적된 산·학·연 클러스터
** 제조업, IT, 지식산업시설 및 지원시설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건물

○ **(인프라 확충) 대학·병원·연구기관** 등에 대해 **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** 신규로 지원하여 **우수대학, 종합병원 등 유치**(14.12월)

□ **(기대효과)** 세종시 투자 여건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**자족 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건설**

* 충남대 병원 등 입주시 약 6,500명 고용 창출, 2만명 인구유발,
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로 약 1만명의 고용창출과 1.4조원의 생산유발

## Ⅲ. 세부 추진계획

| 추 진 과 제 | 소관부처 | 추진일정 |
|---|---|---|
| **1.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** | | |
| **1-1. 도시지역 제기 과제** | | |
| **1-1-1. 개발제한구역(GB) 관련 규제 합리화** | | |
| 1-1-1-1. 취락지역 용도지역 변경 허용 | 국토부 | '14.6월 |
| 1-1-1-2. 임대주택용지의 분양주택용지 변경 허용 | 국토부 | '14.6월 |
| 1-1-1-3. 공원녹지 인정 범위 확대 | 국토부 | '14.6월 |
| 1-1-1-4. 해제지역내 민간참여 관련 규제 완화 | 국토부 | '14.6월 |
| **1-1-2. 민간공원개발 활성화** | | |
| 1-1-2-1. 민간공원 기부채납 비율 완화 | 국토부 | '14.12월 |
| 1-1-2-2. 기부채납 수익사업 동시 추진 허용 | 국토부 | '14.6월 |
| 1-1-2-3. 민간공원 개발절차 간소화 | 국토부 | '14.6월 |
| **1-1-3. 지역도시재생 촉진** | | |
| 1-1-3-1. 입지규제 최소지구 신설 | 국토부 | '14.12월 |
| 1-1-3-2.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 지정 | 국토부 | '14.4월 |
| 1-1-3-3. 민간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 지원 | 국토부 | '14.12월 |
| **1-1-4. 도심지 주차난 해소** | | |
| 1-1-4-1. 주차빌딩내 입주 가능시설에 주거용 시설 포함 | 국토부<br>안행부<br>기재부 | '14.12월 |
| 1-1-4-2. 무인주차장 및 소규모 주차장 조성 | 국토부 | '14.12월 |
| 1-1-4-3. 주차요금 현실화 및 과태료 부과권 확대 | 국토부<br>안행부<br>경찰청 | '14.12월 |
| 1-1-4-4. 주차정보 제공 스마트 앱 개발·보급 | 국토부 | '14.12월 |
| 1-1-4-5. 도심지 주차난 완화 세부대책 마련 | 국토부 등 | '14.6월 |



| 추 진 과 제 | 소관부처 | 추진일정 |
|---|---|---|
| **1-1-5. 도시내 기반시설 관련 지역간 이해관계 조정** | | |
| 1-1-5-1.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| 국토부 | '14.12월 |
| **1-2. 농산어촌지역 제기 과제** | | |
| **1-2-1. 농지규제 유연화** | | |
| 1-2-1-1. 농지소유 허용자격 확대 | 농식품부 | '14.10월 |
| 1-2-1-2. 농업진흥구역 건축규제 완화 | 농식품부 | '14.10월 |
| 1-2-1-3. 농지사용 규제 유연화 | 농식품부 | '14.10월 |
| 1-2-1-4. 농지보전 부담금 분할납부 조건 완화 | 농식품부 | '14.10월 |
| 1-2-1-5.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| 농식품부 | '14.10월 |
| 1-2-1-6. 농업법인간 합병·분할 허용 | 농식품부 | '14.10월 |
| **1-2-2. 산지규제 완화** | | |
| 1-2-2-1. 산림복지단지지구 제도 도입 | 산림청 | '14.12월 |
| 1-2-2-2.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를 통한 의료 부대시설 설치 허용 | 산림청 | '14.12월 |
| 1-2-2-3. 풍력발전시설의 면적 제한 완화 | 산림청 | '14.12월 |
| 1-2-2-4. 산지전용 허가면적 기준 완화 | 산림청 | '14.12월 |
| 1-2-2-5. 관광단지 등의 보전산지 편입제한 완화 | 산림청 | '14.12월 |
| 1-2-2-6. 산지 전용에 따른 토사붕괴 방지시설 설치 의무 완화 | 산림청 | '14.12월 |
| 1-2-2-7. 산지전용 타당성 심사기간 단축 | 산림청 | '14.12월 |
| 1-2-2-8.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및 분할납부 횟수·기간 연장 | 산림청 | '14.12월 |
| 1-2-2-9. 산지 내 공장설립 면적 제한 완화 | 산림청 | '14.12월 |
| 1-2-2-10. 산지구분 타당성조사의 법적근거 마련 | 산림청 | '14.12월 |
| 1-2-2-11.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 착수 | 산림청 | '15.12월 |
| **1-2-3. 귀농귀촌 활성화** | | |

| 추 진 과 제 | 소관부처 | 추진일정 |
|---|---|---|
| 1-2-3-1. 2030세대 귀농인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지원 | 농식품부 | '14.12월 |
| 1-2-3-2. 일반 귀농·귀촌 지원 프로그램 확대 | | |
| 1-2-3-2-1. 자치단체 우수 귀농 프로그램 지원 | 농식품부 | '14.12월 |
| 1-2-3-2-2. 귀농의 집 300개소 건립 | 농식품부 | '14.12월 |
| 1-2-3-2-3. 거점별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| 농식품부 | '14.12월 |
| 1-2-3-2-4. 농산업 인턴제 신청자격 확대 | 농식품부 | '14.12월 |
| 1-2-3-2-5. 빈집빈방정도 안내 서비스 확대 | 농식품부 | '14.12월 |
| 1-2-3-2-6. 귀농인 주택구입 지원사업 확대 | 농식품부 | '14.12월 |
| 1-2-3-2-7. 북한이탈주민 귀농지원 | 농식품부 | '14.12월 |
| 1-2-3-3.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| 농식품부 | '14.12월 |
| **1-2-4.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광상품화** | | |
| 1-2-4-1.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 실시 | 문체부<br>문화재청 | '14.12월 |
| 1-2-4-2. 지역문화유산 보존·활용 종합대책 수립 | 문체부 | '15.1월 |
| **2. 인센티브 부여** | | |
| **2-1. 재정 지원** | | |
| 2-1-1.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확정 | 지역위 | '14.7월 |
| 2-1-2. 특화발전 프로젝트 확정 | 기재부 | '14.7월 |
| 2-1-3. 예산편성의 자율권 확대 | | |
| 2-1-3-1. 자율재원 지속 확충 | 기재부 | '17.12월 |
| 2-1-3-2. 포괄보조방식 예산 확대 | 기재부 | '15.2월 |
| 2-1-3-3. 사업지침 간소화 | 기재부 | '14.6월 |
| 2-1-3-4.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| 기재부 | '17.12월 |
| **2-1. 기업의 지역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** | | |
| 2-1-1. 지역이전 세제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 연장 | 기재부 | '14.12월 |
| 2-1-2. 혁신도시, U턴기업 법인세 감면 기산일 변경 | 기재부 | '14.12월 |
| 2-1-3.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 공제율 인상 | 기재부 | '14.12월 |
| **2-2. 지역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 확대** | | |



| 추 진 과 제 | 소관부처 | 추진일정 |
|---|---|---|
| 2-2-1. 도시첨단 산업단지 추가지정 | 국토부 | '15.12월 |
| 2-2-2.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 | 국토부<br>산업부 | '14.6월 |
| 2-2-3. 지역별 특화 산업단지 추진방안 마련 | 국토부 | '14.12월 |
| **2-3. 투자선도지구 신설** | | |
| 2-3-1. 투자 선도지구 신설 및 인센티브 제공 | 국토부 | '14.12월 |
| **2-4. 정책자금을 활용한 금융인센티브 제공** | | |
| 2-4-1. 지역설비투자펀드 신설 | 금융위 | '14.9월 |
| 2-4-2. 마케팅 자금 등 지원 | 중기청 | '14.7월 |
| 2-4-3. 모태펀드 지역계정 신설 | 중기청 | '14.12월 |
| **2-5. 유망지역기업 인력·판로·기술개발 지원** | | |
| 2-5-1.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정(기업소재지별 가점 우대) | 병무청 | '14.5월 |
| 2-5-2. 시도별 특화업종을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대상에 포함 | 고용부 | '14.7월 |
| 2-5-3. 홈쇼핑 채널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 확대 | 미래부 | '14.12월 |
| 2-5-4.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 기업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| 미래부 | '14.9월 |
| 2-5-5. 중소기업·연구기관 공동 R&D 시범사업 추진 | 미래부 | '14.5월 |
| **3. 기존 거점개발사업 활성화** | | |
| **3-1. 혁신도시 활성화** | | |
| 3-1-1. 공공기관 이전 촉진 | 국토부<br>기재부<br>국조실<br>교육부 | '15.12월 |
| 3-1-2. 분양가 인하 | 국토부 | '14.12월 |
| 3-1-3. 입지 규제 개선 | 국토부 | '14.12월 |
| 3-1-4. 토지 공급 수의계약 대상 확대 | 국토부 | '14.6월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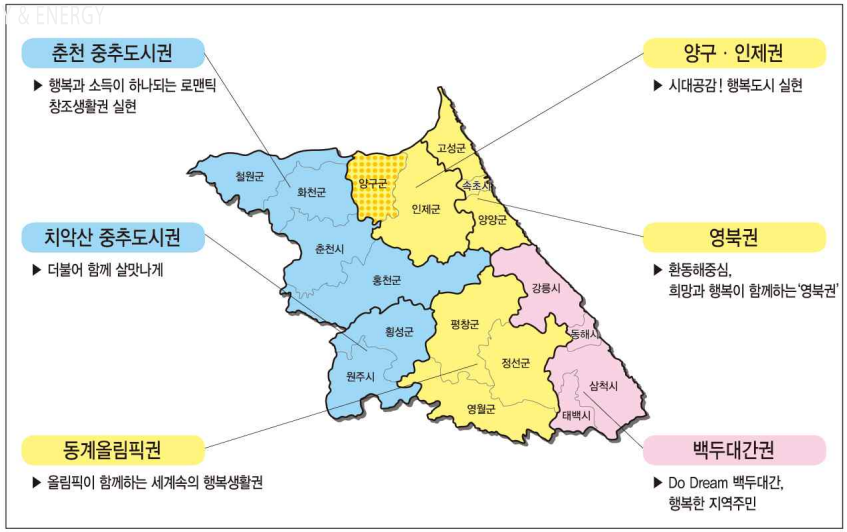
| 추 진 과 제 | | 소관부처 | 추진일정 |
|---|---|---|---|
| | 3-1-5. 추진체계 개선 및 지자체 책임성 확보 | 국토부 | '14.12월 |
| | 3-1-6. 지역 인재 채용 확대 | 국토부<br>기재부 | '15.12월 |
| **3-2. 기업도시 개발 촉진** | | | |
| | 3-2-1.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| 기재부 | '14.12월 |
| | 3-2-2. 개발구역 면적제한 요건 개선 | 국토부 | '15.12월 |
| | 3-2-3. 부분준공 허용 | 해수부 | 즉시 |
| **3-3. 세종시 자족 기능 강화** | | | |
| | 3-3-1. 앵커시설 유치를 위한 맞춤형 토지공급 추진 | 행복청 | '14.12월 |
| | 3-3-2. 도시첨단산단 지정 추진, SB Plaza 유치, 지식산업센터 설립 지원 | 행복청 | '14.1 월 |
| | 3-3-3. 우수대학 종합병원 등 유치 | 행복청 | '14.12월 |



**별 첨** **지역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제안사업(예시)**

## 1 강원지역 - 중추 2개, 도농 1개, 농어촌 3개 / 197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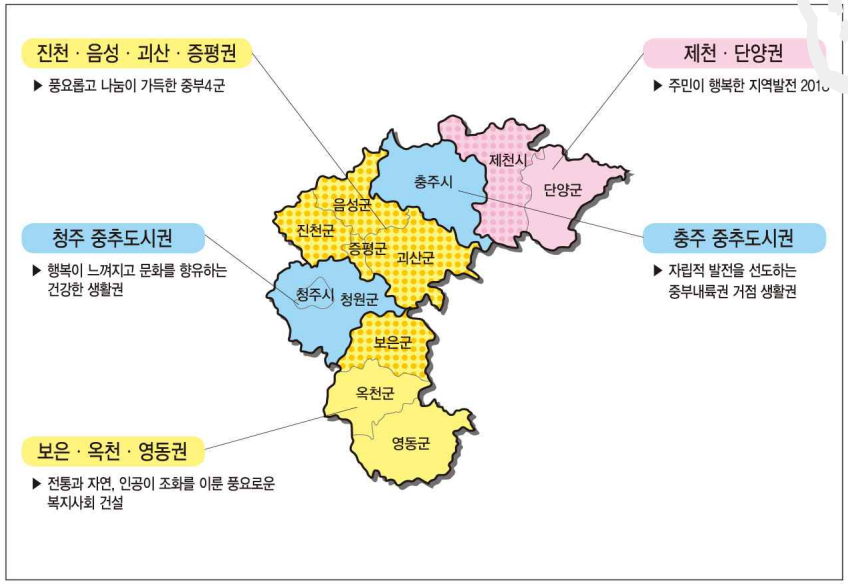
| 유 형 | 구 성 | 주요 제안사업(예시) |
|---|---|---|
| 중추도시 생활권 (2개) | 춘천+홍천+화천 +철원+양구 (443천명) | · 글로벌 나노바이오 기술산업화 융합지구 조성<br>· 광역재난 안전시스템 및 지원시설 공동운영<br>· 호수문화관광권 협력사업 |
| | 원주+횡성 (372천명) | ·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<br>·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용<br>· 횡성 한우먹거리촌 조성사업 |
| 도농연계 생활권 (1개) | 강릉+동해 +삼척+태백 (436천명) | · 쓰레기 배출장소 개선<br>· 산불예방 헬기공동 임차 |
| 농어촌 생활권 (3개) | 속초+고성+양양 (142천명) | · 농어촌 전시시설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콘텐츠 개선<br>· 해양심층수 활용 농작물 특화산업 육성 |
| | 영월+평창+정선 (124천명) | · 남한강 삼색물길 사업<br>·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문화재생 |
| | 인제+양구 (55천명) | · 도시가스 위성기지 설치<br>· 에코 라이프타운 조성 |




▶ 표시는 인근 중추도시생활권에 중복으로 포함된 시 · 군임

## 2 충북지역 - 중추 2개, 도농 1개, 농어촌 2개 / 171건

| 유 형 | 구 성 | 주요 제안사업(예시) |
|---|---|---|
| 중추도시 생활권 (2개) | 청주+청원+증평 +보은+괴산+진천 (988천명) | · 일자리 중심Hub센터 설치<br>· 도시재생(舊 연초제조창 부지 및 주변구역)<br>· 청주-증평-진천 광역버스정보시스템(BIS) 구축 |
| | 충주+제천+음성 (438천명) | · 충북 북부권 행복일자리지원센터 설치<br>· NIMBY에서 PIMBY로 재탄생하는 소각장<br>· UN 세계평화 비전 창조사업 |
| 도농연계 생활권 (1개) | 제천+단양 (168천명) | · 제천-단양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<br>· 단양 아로니아 6차산업화 사업 |
| 농어촌 생활권 (2개) | 옥천+보은+영동 (138천명) | · 과수거점 유통센터 건립<br>· 슬레이트 지붕 철거 |
| | 음성+진천 +증평+괴산 (227천명) | · 혁신도시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<br>· 진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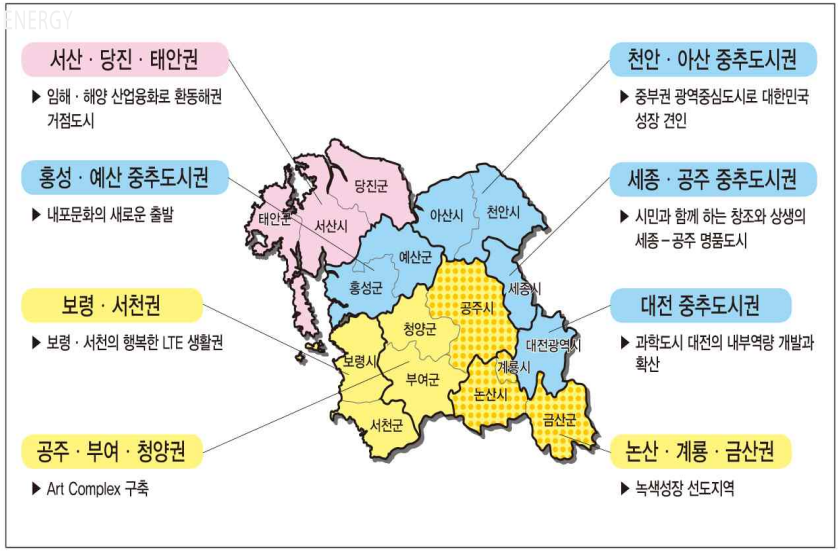



▶ 표시는 인근 중추도시생활권에 중복으로 포함된 시 · 군임



## 3 대전·세종·충남지역 - 중추 4개, 도농 1개, 농어촌 3개 / 189건

| 유 형 | 구 성 | 주요 제안사업(예시) |
|---|---|---|
| 중추도시 생활권 (4개) | 대전+옥천+금산 +계룡+논산 (1,807천명) | · 광역정보버스시스템(BIS) 구축<br>· 문화관광자원 통합 마케팅<br>· 한방건강대학 운영 |
| | 세종+공주 (239천명) | · 자전거도로망 및 무인대여 공동이용시스템 구축<br>· 생태와 선사문화 테마숲길 조성<br>· 세종시와 연계한 5도2촌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|
| | 천안+아산 (905천명) | · 천안-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<br>· 천안-아산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<br>· 천안 추모공원 공동이용 |
| | 홍성+예산 (176천명) | · 내포 농경 체험프로그램 운영<br>· 내포 협력 거버넌스 구축<br>· 내포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|
| 도농연계 생활권 (1개) | 당진+서산+태안 (387천명) | · 어린이 전용 종합건강관리센터 설치 운영<br>·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|
| 농어촌 생활권 (3개) | 공주+부여+청양 (222천명) | ·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<br>· 감성나눔! 금강권 문화기부 콘서트 |
| | 논산+계룡+금산 (225천명) | · 친환경 발효 미생물 보급<br>· 슬레이트지붕 철거 |
| | 보령+서천 (163천명) | · 문화예술공연 공동유치 및 찾아가는 대민서비스 운영<br>· 어메니티 장항 라온제나 프로젝트(거점 우수중학교)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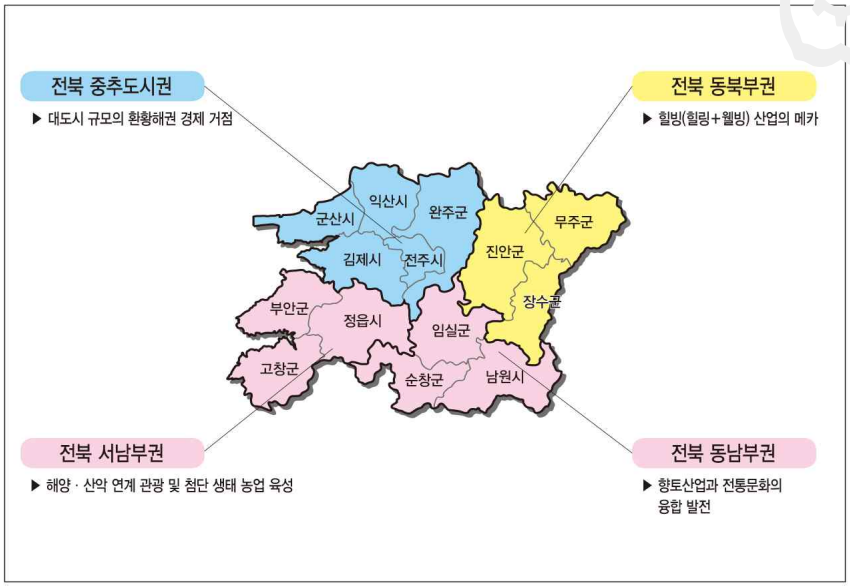

▶ 표시는 인근 중추도시생활권에 중복으로 포함된 시 · 군임



MOTIE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# 4 전북지역 - 중추 1개, 도농 2개, 농어촌 1개 / 143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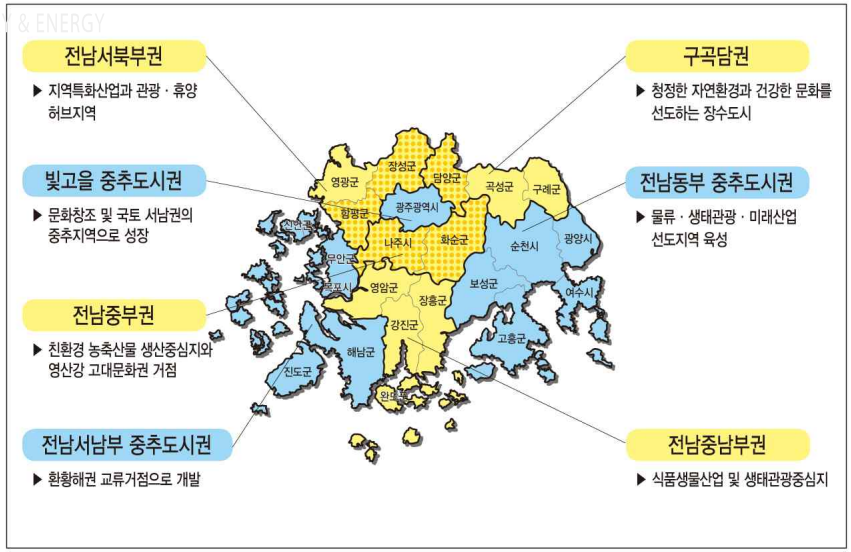
| 유 형 | 구 성 | 주요 제안사업(예시) |
|---|---|---|
| 중추도시 생활권 (1개) | 전주+군산+익산 +김제+완주 (1,414천명) | · 韓스타일 K-Culture 연계 사업<br>· 희망드림 새일 프로젝트(여성일자리)<br>·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|
| 도농연계 생활권 (2개) | 정읍+고창+부안 (237천명) | · 전북 서남부 농기계 공동활용센터 건립<br>· 1박2일 Home Town 힐링 Berry Road 프로그램 구축 |
| | 남원+임실+순창 (146천명) | · 발효농식품 신6차산업밸리 팜팜<br>· 힐빙 두레마을 활성화 사업 |
| 농어촌 생활권 (1개) | 무주+진안+장수 (75천명) | ·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<br>· 무진장 경계지역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 |






## 5 광주·전남지역 - 중추 3개, 농어촌 4개 / 314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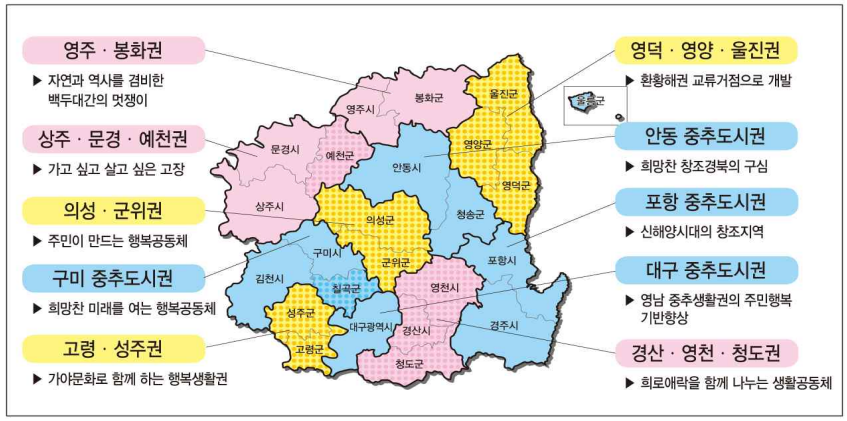
| 유 형 | 구 성 | 주요 제안사업(예시) |
|---|---|---|
| 중추도시 생활권 (3개) | 광주+나주+담양 +화순+함평+장성 (1,733천명) | · 통합 컨벤션뷰로 연계사업<br>· 장의시설 조성 및 요금 조정<br>· 대중교통 환승할인 지원사업 |
| | 목포+무안+신안 +해남+진도 (475천명) | · 목포시 도시재생<br>· 갯벌생태 프로그램 개발사업<br>·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|
| | 여수+순천+광양 +보성+고흥 (837천명) | · 여자만 갯노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<br>· 임진왜란 호국 교육벨트 사업<br>· 작은영화관 조성 |
| 농어촌 생활권 (4개) | 나주+화순 (155천명) | · 자연친화형 장사시설 조성<br>· 한센인(호혜원) 축산단지 바이오순환림 조성 |
| | 담양+곡성+구례 (106천명) | · 관광지 로컬푸드 매장 연계사업<br>·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|
| | 장성+영광+함평 (139천명) | · 행복을 드리는 전문인력 교육센터 설립<br>· 떡산업 고도화 사업 |
| | 영암+장흥 +강진+완도 (195천명) | · 도시가스 공급배관 및 LPG 소형 저장탱크<br>· 정남진 해안누리길 활성화 사업 |




▶ 표시는 인근 중추도시생활권에 중복으로 포함된 시 · 군임

## 6 대구·경북지역 - 중추 4개, 도농 3개, 농어촌 3개 / 422건

| 유 형 | 구 성 | 주요 제안사업(예시) |
|---|---|---|
| 중추도시 생활권 (4개) | 대구+영천+경산 +군위+청도+고령 +성주+칠곡+합천 (3,172천명) | · 산업단지 블루로드 활력화사업(노후산단 재생)<br>· 신의 물방울 연계사업<br>· 팔공산 고지대 자연부락 광역상수도 공급 |
| | 포항+경주+영덕 +울진+울릉 (885천명) | · 해양융합산업 연구센터 및 실증단지 조성<br>· 동해 수산업 광역체계 구축<br>·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|
| | 구미+김천+칠곡 (675천명) | · 광역버스정보시스템(BIS) 구축<br>· 구미-칠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공동연계<br>· 구미-김천 특화가로 조성 |
| | 안동+예천+의성 +청송+영양 (315천명) | · 의성-안동 광역상수도 설치<br>· 도농순환형 일자리 창출 구축<br>· 작은영화관 |
| 도농연계 생활권 (3개) | 영주+봉화 (146천명) | · 백두대간 하늘공원(장사시설) 조성<br>· 신생아 공동분만 산부인과 운영 |
| | 상주+문경+예천 (226천명) | · 길따라 맛따라 전통 주막문화 체험관광사업<br>· 문경-상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|
| | 경산+청도+영천 (400천명) | · 차량융합전장부품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<br>·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사업 |
| 농어촌 생활권 (3개) | 고령+성주 (81천명) | · 성주-고령 지역내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<br>· 가야산 하수처리시설 설치 |
| | 의성+군위 (80천명) | · 위천 Healing-River 조성<br>· 삼국유사 일연 테마로드 조성 |
| | 영덕+영양+울진 (110천명) | · 백두대간 산나물 산업 육성<br>·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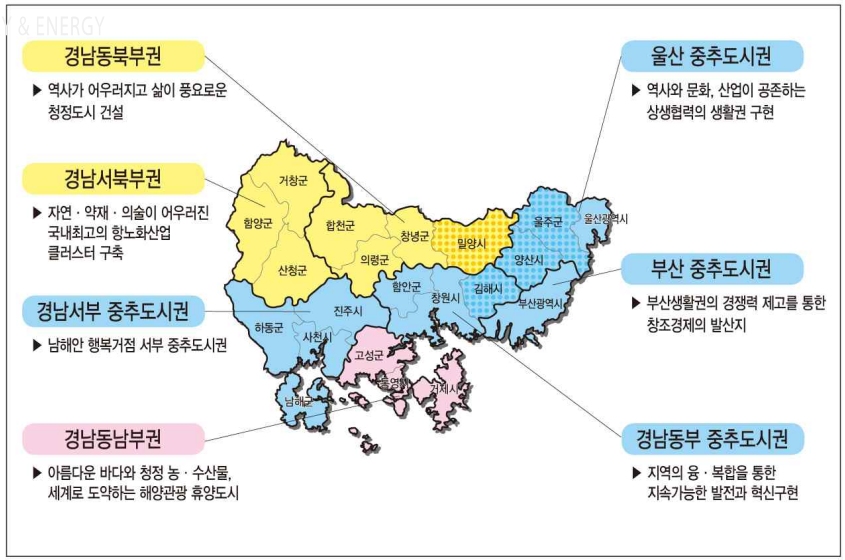


▶ 표시는 인근 중추도시생활권에 중복으로 포함된 시 · 군임



## 7 부산·울산·경남지역 - 중추 4개, 도농 1개, 농어촌 2개 / 457건

| 유 형 | 구 성 | 주요 제안사업(예시) |
|---|---|---|
| 중추도시 생활권 (4개) | 부산+김해 +양산+울주 (4,530천명) | · 창조벨트 구축 사업<br>· 철길마을 생활기반 조성<br>· 부산 영락공원 화장시설 공동 활용 |
| | 울산+양산 +경주+밀양 (1,807천명) | ·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사업<br>·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통합안내체계 구축<br>· 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 시범사업 |
| | 창원+김해+함안 (1,676천명) | ·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<br>· 미니복합타운 조성<br>· 장애인 구강 보건 이동차량 운영 |
| | 진주+사천 +남해+하동 (551천명) | · 경전선 폐선 활용한 남도순례길 조성<br>· 동서통합지대 코어지대 조성 및 민관학 협력<br>· 녹색 어메니티 연계협력 |
| 도농연계 생활권 (1개) | 통영+거제+고성 (438천명) | · 통영 · 고성 광역폐기물 소각장 설치<br>· 전통시장 폐수수질개선시설 설치 |
| 농어촌 생활권 (2개) | 거창+함양+산청 (140천명) | · 불로장생 힐링루트 조성<br>· 산약초밸리 조성 |
| | 창녕+의령 +밀양+합천 (251천명) | · 무형자원으로 잇는 에코뮤지엄 문화탐방<br>· 도농간 일자리나눔센터 · 농촌중심지 활성화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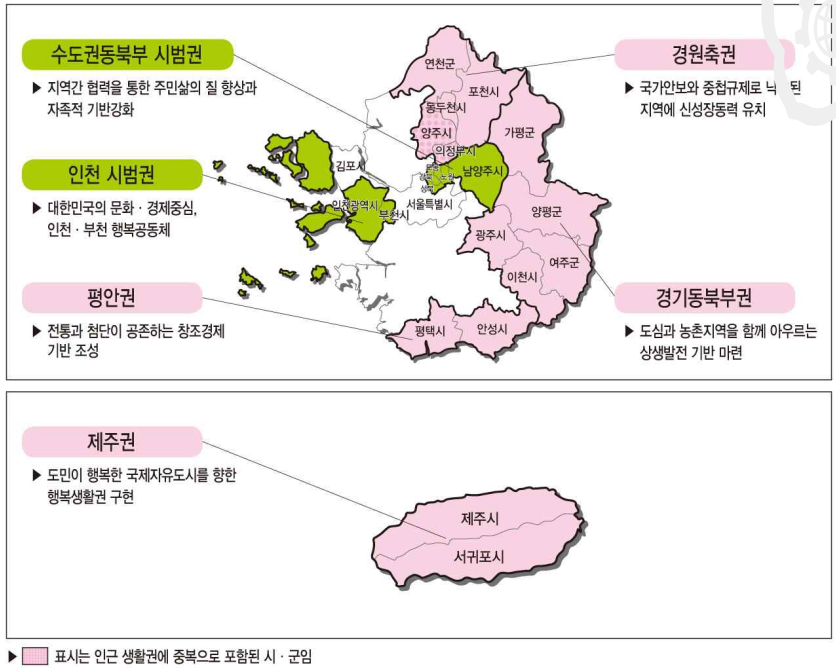


▶ 표시는 인근 중추도시생활권에 중복으로 포함된 시 · 군임

MOTIE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# ⑧ 서울·인천·경기·제주 - 시범 2개, 도농 4개 / 242건

| 유 형 | 구 성 | 주요 제안사업(예시) |
|---|---|---|
| 시범 생활권 (2개) | 서울 4구(도봉+노원+강북+성북)+의정부+남양주+양주 (3,023천명) | · 수락·불암산 둘레길 조성사업<br>· 도심 체재형 문화농원 조성<br>· 동북권 박물관 네트워킹 구축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 |
| | 인천+부천 (3,713천명) | · 한남정맥 마루금잇기사업(끊어진 생태길 잇기)<br>· 근대건축물 보존사업 |
| 도농연계 생활권 (4개) | 의정부+양주+포천+동두천+연천 (937천명) | · 폐기물처리시설 공동 사용<br>· 공동화장시설 건립 |
| | 평택+안성 (615천명) | ·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<br>· 광역버스정보체계(BIS) 구축 |
| | 광주+이천+여주+양평+가평 (750천명) | · 친환경쌀 6차산업 고도화<br>· 문화예술마을 조성 |
| | 제주+서귀포 (604천명) | · 국민행복 관광지 조성(무장애 관광지 조성)<br>· 제주 에코브랜드 상품 개발 및 활성화<br>·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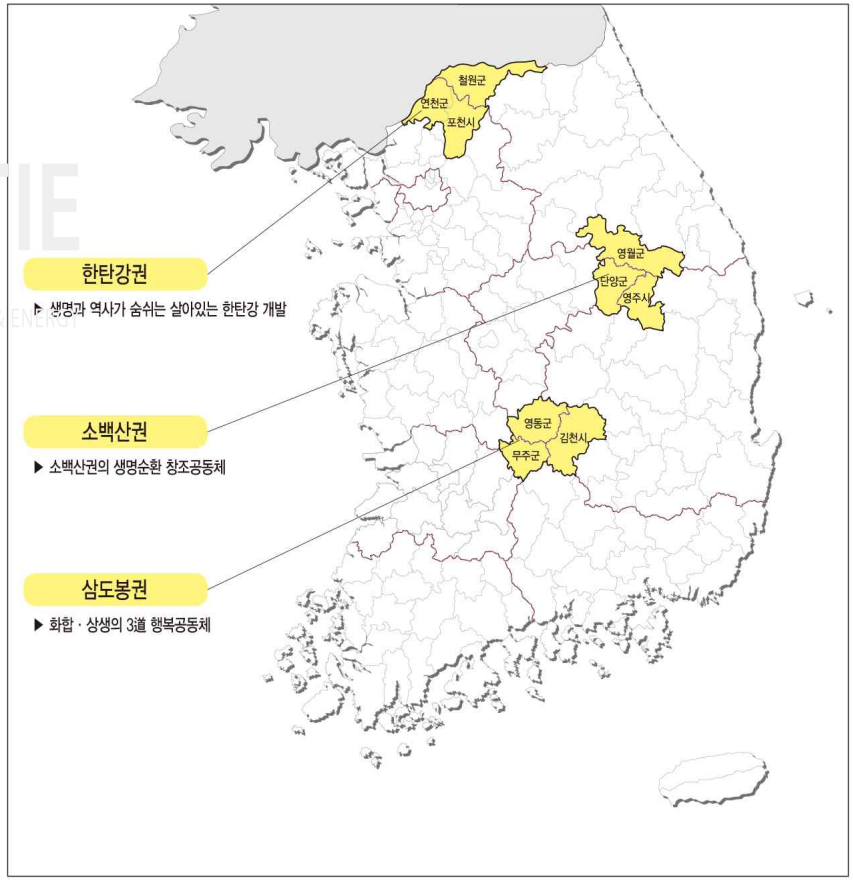



▶ 표시는 인근 생활권에 중복으로 포함된 시 · 군임



## ⑨ 道간 경계 초월 - 농어촌 3개 / 11건

| 유 형 | 구 성 | 주요 제안사업(예시) |
|---|---|---|
| 농어촌 생활권 (3개) | 포천+연천+철원 (251천명) | · 한탄강 생태하천 복원<br>· 특수상황지역(접경지역) 개발 |
| | 영월+단양+영주 (184천명) | · 3道 3色 융복합 역사체험단지 조성<br>· 3도 접경 농특산물 및 관광상품 공동마케팅 |
| | 영동+무주+김천 (211천명) | · 자연부락 지방상수도 공동이용<br>· 삼도봉 권역 난시청 해소, 임산물 공동브랜드 |




MOTIE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